

03-21 KGSS 조사원 지침서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04	16.3	◇ 용어정의 ▶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없애거나 느슨하게 적용시키는 것
	16.8	◇ 용어정의 ▶ 과세공정성: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는 것
	20	◇ 지침: 자본주의 • 자본주의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모르겠다”라고 체크할 것 • 필요하다면, 응답자에게 보기카드를 보여줄 수도 있음
	41	◇ 용어정의 ▶ 가족: 미혼자녀는 포함되나,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됨
	46.2 49.2	◇ 용어정의 ▶ 상용직: 고용계약이 길어서, 비교적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경우임(예: A회사 대리 등) ▶ 임시직: 고용계약이 대체로 1개월은 넘지만 1년을 넘지는 않는 경우임(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능공 등) ▶ 일용직: 고용계약이 대체로 1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임(예: 아르바이트 판매원 등)
	46.6 49.6	◇ 용어정의 ▶ 공기업: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예: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 공익기관: 각급 학교나 병원 등의 비영리 기관(사립시설이어도 해당됨)
	46.8 49.8	◇ 용어정의 ▶ 무급가족종사자: 월급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일컬으며, 예를 들어 부부가 세탁소를 운영할 경우 세탁소가 부인 소유라고 말을 하면 남편이 무급가족종사자이고, 아내가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한편, 명확한 언급이 없을 경우 자영업자인지 무급가족종사자인지 여부는 응답자의 주관에 맡기도록 함
	56	◇ 지침 • 접촉빈도가 많은 친척을 기준으로 체크할 것
	72	◇ 지침: 종교적 극단주의자 • 극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극단적인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는 사람 정도로 설명해줄 것. 한편,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부연 설명해서는 안 됨 ※ 설문지를 응답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범주가 너무 많아서 응답자가 기억하기 힘들어 할 경우에는 설문지의 응답보기를 보여주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005	18.3	◇ 용어정의 ▶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없애거나 느슨하게 적용시키는 것
	18.8	◇ 용어정의 ▶ 과세공정성: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는 것
	21	◇ 지침: 자본주의 •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모르겠다”라고 체크할 것 • 필요하다면, 응답자에게 보기카드를 보여줄 수도 있음 ◇ 용어정의 ▶ 착취: 다른 사람의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46	◇ 용어정의 ▶ 가족: 미혼자녀는 포함되나,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됨
	49.9	◇ 용어정의 ▶ 가구: 일상 시에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집단으로 동거인, 고용인도 주거와 생계가 공동이면 가구원이라는 점에서 가족과 구분됨 ▶ 가구주: 한 가구의 대표자
	54.1 56.1	◇ 용어정의 ▶ 피고용인/임금근로자: 임금이나 봉급을 받고 남에게 고용된 사람 ▶ 자영업자: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54.2 56.2	◇ 용어정의 ▶ 상용직: 고용계약이 길어서, 비교적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경우임(예: A회사 대리 등) ▶ 임시직: 고용계약이 대체로 1개월은 넘지만 1년을 넘지는 않는 경우임(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능공 등) ▶ 일용직: 고용계약이 대체로 1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임(예: 아르바이트 판매원 등)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05	(계속)	※ 동일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여도 근로계약이 임시이면 '임시근로자'에, 일용이면 '일용 근로자'로 표시함
	54.3 56.3	◇ 용어정의 ▶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일을 시작할 때 몇 시간이나 일(근무)할 것인지 미리 결정한 경우,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일하는 경우도 포함됨 ▶ 전일제: 몇 시간이나 일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경우
	54.6 56.6	◇ 용어정의 ▶ 공기업: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예: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 공익기관: 각급 학교나 병원 등의 비영리 기관(사립시설이어도 해당됨)
	54.10 56.8	◇ 용어정의 ▶ 무급가족종사자: 보수를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가족의 일을 도와주더라도 월급을 받는 경우는 피고용인이 됨
	59.5	◇ 용어정의 ▶ 관공서 국장: 중앙행정부처의 2-3급 공무원
	59.22	◇ 용어정의 ▶ 미상공: 재봉틀 일을 하는 기술직 노동자
	67.7 93.7	◇ 용어정의 ▶ 가족친화적 제도: 기업에서 직장가 가정에서의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남녀근로자를 지원해주는 기업내부의 제도(예: 기업탁아시설, 육아 및 가족부양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
2006	3.3 3.12	◇ 용어정의 ▶ 교육계/학계: 교육계는 초중고대학 등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들을 의미하며, 학계는 학술 및 과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을 의미함
	3.8 3.9	◇ 용어정의 ▶ 중앙정부 부처/지방자치 정부: 중앙정부부처는 전국의 행정을 통괄하는 기관들을 말하며, 지방자치정부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중앙정부에서 독립하여 그 지역안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함
	9	◇ 용어정의 ▶ 한국의 정치상황: 여기서의 정치상황은 국내의 정치상황을 의미함
	16	◇ 지침: 자본주의 • 자본주의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모르겠다"라고 체크할 것 ◇ 용어정의 ▶ 착취: 다른 사람의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23	◇ 용어정의 ▶ 기업별 노조: 같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 산업별 노조: 금융업, 운송업 등 같은 종류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 전국 노조: 직장이나 업종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을 포괄하는 노동조합
	40	◇ 용어정의 ▶ 가족: 미혼자녀는 포함되나,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됨
	44	◇ 용어정의 ▶ 가구: 일상 시에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집단으로 동거인, 고용인도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한다면 가구원이라는 점에서 가족과 구분됨 ▶ 가구주: 한 가구의 대표자
	54.1 56.1	◇ 용어정의 ▶ 피고용인/임금근로자: 임금이나 봉급을 받고 남에게 고용된 사람 ▶ 자영업자: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54.2 56.2	◇ 용어정의 ▶ 상용직: 고용계약이 길어서, 비교적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경우임 ▶ 임시직: 고용계약이 대체로 1개월을 넘지만 1년을 넘지는 않는 경우임 ▶ 일용직: 고용계약이 대체로 1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임 ※ 동일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여도 고용계약이 임시이면 '임시직', 일용이면 '일용직'으로 표시함
	54.3 56.3	◇ 용어정의 ▶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일을 시작할 때 몇 시간 동안 일(근무)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고 일하는 경우.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일하는 경우도 포함됨 ▶ 전일제: 시간제와 달리 몇 시간 동안 일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근무하는 일반적인 경우
54.7 56.6	◇ 용어정의 ▶ 공기업: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예: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06	(계속)	▶ 공익기관 : 각 급 학교나 병원 등의 비영리 기관(사립시설이어도 해당됨)
	54.9 56.8	◇ 용어정의 ▶ 무급가족종사자 : 보수를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가족의 일을 도와주더라도 월급을 받는 경우는 피고용인이 됨
	78	◇ 용어정의 ▶ 배우자와의 결혼결정 :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함
	87- 100	◇ 용어정의 ▶ 정부 : 정부는 중앙정부를 의미함
	91.3	◇ 용어정의 ▶ 기업규제의 완화 :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없애거나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
	91.5	◇ 용어정의 ▶ 사양산업 : 경영실적이나 기업전망 및 발전상황 등으로 보아 점차로 쇠퇴해가는 경향을 보이는 산업
	95.3	◇ 용어정의 ▶ 불심 검문검색 : 거리에서 사람을 멈춰 세우고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하며 검색하는 것
	101- 106	◇ 용어정의 ▶ 공무원 : 지방 및 중앙 공무원, 하위 및 고위 공무원, 선출 및 임명 공무원 모두를 포함함
2008	3.3	◇ 용어정의 ▶ 교육계 : 교육이나 교육사업과 관계가 있는 분야. 주로 초중고교 등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들을 의미함
	3.8	◇ 용어정의 ▶ 중앙정부 부처 : 중앙정부부처는 전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들을 말하는데 대통령직속 기관인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국무총리직속기관인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각 부서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각 청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중앙정부부처에 해당됨
	3.9	◇ 용어정의 ▶ 지방자치 정부 : 지방자치정부는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 받아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공단체로 크게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구) 등으로 나뉨.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 보조기관인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및 출장소,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등의 하부 행정기관이 있고, 의결기관에는 지방의회가 있음
	3.10	◇ 용어정의 ▶ 국회 : 국회는 국가의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을 말함
	3.12	◇ 용어정의 ▶ 학계 : 학문을 연구하는 사회, 또는 학자의 사회, 주로 학술 및 과학적 연구를 중점으로 하는 기관들을 의미함
	3.15	◇ 용어정의 ▶ 청와대 :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기관을 말하며 동시에 집무공간인 대통령 관저를 말함. 직속기관으로 실장, 경호처장, 대변인, 및 40명의 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대통령관저, 국내외빈 접견을 위한 여러 건물들이 있음
	3.16	◇ 용어정의 ▶ 시민운동단체 : 시민의 입장에서 행하여지는 정치·사회운동을 이끄는 사회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반핵운동연대 등
	10	◇ 용어정의 ▶ 한국의 정치상황 : 여기서의 정치상황은 국내의 정치상황을 의미함
	14	◇ 용어정의 ▶ 진보적 :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려는 입장 ▶ 보수적 :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유지하려는 입장
	18	◇ 지침: 자본주의 • 자본주의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모르겠다”라고 체크할 것 ◇ 용어정의 ▶ 자본주의 : 생산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획득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도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08	(계속)	<p>록 보장하는 사회·경제체제</p> <p>▶ 착취: 다른 사람의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p>
	25	<p>◇ 용어정의</p> <p>▶ 노동조합: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p> <p>▶ 기업별 노조: 개별 기업이나 동일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p> <p>▶ 산업별 노조: 섬유, 광산, 통신, 금융, 관광 등 같은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p> <p>▶ 전국 노조: 직장이나 업종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을 포괄하는 노동조합</p>
	43	<p>◇ 용어정의</p> <p>▶ 가족: 미혼자녀는 포함되나,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는 가구표에 기입하지 않음</p>
	46.8	<p>◇ 용어정의</p> <p>▶ (6) 심신장애: 정신기능의 장애,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p> <p>▶ (9) 은퇴: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 명예퇴직 포함</p> <p>▶ (10) 정년퇴직: 정하여진 나이가 되어 직장에서 물러남</p>
	47	<p>◇ 용어정의</p> <p>▶ 가구: 평소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집단으로 가족이 아닌 경우도 가구가 될 수 있음(동거인, 고용인도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한다면 가구에 속함)</p> <p>▶ 가구주: 한 가구의 대표자(세대주나 호주가 아니어도,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될 수 있음)</p>
	52.1 54.1	<p>◇ 용어정의</p> <p>▶ 피고용인/임금근로자: 임금이나 봉급을 받고 남에게 고용된 사람</p> <p>▶ 자영업자: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거나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p>
	52.2 54.2	<p>◇ 용어정의</p> <p>▶ 상용직: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이 길어서, 비교적 오랜 기간(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경우임</p> <p>▶ 임시직: 임시로 맡는 직위나 직책, 고용계약이 대체로 1개월은 넘지만 1년을 넘지는 않는 경우임</p> <p>▶ 일용직: 고용계약이 대체로 1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임 주로 건설근로자가 해당되며 그 외 중국집 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을 포함 ※ 동일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여도 고용계약이 임시이면 ‘임시직’, 일용이면 ‘일용직’으로 표시함</p>
	52.3 54.3	<p>◇ 용어정의</p> <p>▶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일을 시작할 때 몇 시간 동안 일(근무)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고 일하는 경우.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일하는 경우도 포함됨</p> <p>▶ 전일제: 시간제와 달리 몇 시간 동안 일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근무하는 일반적인 경우</p>
	52.6 54.6	<p>◇ 용어정의</p> <p>▶ 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 철도, 우편, 수도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룸(예: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p> <p>▶ 사기업: 민간인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업</p> <p>▶ 공익기관: 학교, 병원, 방송사, 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사회전체 및 공공의 이익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p>
	52.8 54.8	<p>◇ 용어정의</p> <p>▶ 무급가족종사자: 보수를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가족의 일을 도와주더라도 월급을 받는 경우는 피고용인이 됨</p>
	53 55	<p>◇ 용어정의</p> <p>▶ 산업: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p> <p>▶ 직종: 직업이나 직무의 종류</p> <p>▶ 직장명: 종사하는 기관이나 사업체의 이름</p> <p>▶ 직위: 직무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적, 행정적 위치나 위계</p> <p>▶ 업무내용: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개별 종사자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수행되었거나 또는 수행되도록 설정, 교육 훈련된 업무</p>
	73	<p>◇ 용어정의</p> <p>▶ 열반: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목적</p>
	92.4	<p>◇ 용어정의</p> <p>▶ 원불교: 1916년에 박종빈이 전라북도 익산시에 총본산을 두고 세운 불교 신흥교파,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대중화를 주창하여 각자 직업에 종사하며 교화사업을 함</p>
	92.5	<p>◇ 용어정의</p> <p>▶ 천도교: 최제우가 창건한 동학을 제3대 교주인 손병희가 개칭한 이름.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유일신 한울님을 신앙대상으로 하는 종교임</p>
	92.6	◇ 용어정의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08	(계속)	▶ 이슬람교 : 610년에 아라비아 예언자 마호메트가 창시한 세계 3대 종교의 하나. 정교일치의 일신교로 유일신 알라가 마호메트를 통하여 계시한 코란을 경전으로 함
	92.7	◇ 용어정의 ▶ 힌두교 : 인도의 토착신앙과 브라만교가 융합한 종교체계로 사회제도와 연계가 특징적임
	92.8	◇ 용어정의 ▶ 유대교 :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기원전 4세기부터 발달한 유대인의 민족종교, 유일신 여호와를 신봉하고 선민사상을 강하게 가짐
	103	◇ 용어정의 ▶ 서양고전음악 :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음악으로 클래식이라고도 함, 가곡, 소나타, 아리아, 교향곡, 협주곡 등을 포함. (한국)가곡은 서양고전음악에 포함됨 ▶ 대중음악 :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음악양식의 총칭, 여기에서는 록음악과 재즈/블루스를 제외한 모든 대중가요를 포함 ▶ 한국전통음악 :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판소리, 창 등의 국악과 한국민요 등을 포함
	117.1	◇ 용어정의 ▶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정당 고위공직자, 시장, 외교관 등
	117.2	◇ 용어정의 ▶ 상급관리자 : 생산 및 작업 관리자, 재정 및 행정관리자, 인사 및 노사관계 관리자, 세일즈 및 마케팅 관리자, 광고 및 홍보 관리자, 공급 및 유통 관리자, 회계서비스 관리자, 연구개발관리자, 중소기업 관리자 등
	117.3	◇ 용어정의 ▶ 전문가 : 물리학, 수학, 공학 전문가, 생물학 전문가, 의사, 약사, 간호전문가, 교육전문가(대학교수, 초·중·고교, 유치원 교사, 특수교육교사, 기타 교육전문가)
	117.4	◇ 용어정의 ▶ 엔지니어 및 준전문가 : 물리학, 공학 기술자, 컴퓨터 준전문가(컴퓨터 장비, 산업로봇 조작자), 광학 전기장비조작자, 선박 항공 기술자, 안전 품질 검사자, 건강 관련 준전문가(의료, 간호 보조원), 교육, 재정·서비스관련, 사업관련, 행정, 경찰, 사회사업관련 준전문가, 예술·오락·스포츠 준전문가, 종교관련 준전문가
	117.5	◇ 용어정의 ▶ 사무직원 : 비서, 자판 조작자, 회계, 통계, 재정관련사무원, 물류, 수송관련사무원, 도서관, 우편관련업무 사무원, 계산원, 금전출납계원, 여행대행사 및 안내 사무원, 전화교환수
	117.6	◇ 용어정의 ▶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 여행관련 서비스 근로자(여행사 승무원, 여행가이드, 교통안내원), 가사 및 레스토랑 서비스근로자(가정부, 요리사, 웨이터), 보육관련 노동자, 소방수, 경찰, 상점 판매원, 시장상인
	117.7	◇ 용어정의 ▶ 농업, 어업 및 임업 숙련근로자 : 숙련 농어민(농업, 양돈, 양계, 수산업), 임업 숙련 노동자
	117.8	◇ 용어정의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 건설관련 근로자(석공, 콘크리트, 전기, 페인트 등), 광물, 기계관련 근로자, 전기설비 기능원, 수공예 관련 근로자, 음식가공, 목재관련, 직물, 가죽관련 근로자
	117.9	◇ 용어정의 ▶ 공장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공장 관련(광업, 유리, 목재, 화학, 전력, 산업로봇 등) 조작원, 기계조작원, 조립공(기계, 전기, 금속, 목재, 종이, 직물 등), 운전수, 농업 설비 조작원, 선원
	117.10	◇ 용어정의 ▶ 단순노무자 : 판매 및 서비스 단순노무자, 농어업 관련 노동자, 광부, 제조업 및 교통관련 단순노무자
반복 핵심 설문		
3	◇ 유의사항 • 사회 각 기관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 12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2009 KGSS 자료집」에 있는 《프로빙 지침》을 참고하여 그 뜻을 설명해 주어야 함(《프로빙 지침》 해당 문항: 교육계/중앙정부부처/지방자치 정부/국회/학계/청와대/시민운동단체)	
10 10.1 11	◇ 유의사항 • 정당 이름 응답 보기에서(66) 기타(어느 정당:) : 이 응답범주는 응답자가 직접 말하는 개방형 범주임. 응답자의 말을 세심히 듣고, 정확한 정당명을 기입하되, 응답자가 정당명을 정확하게 모를 시에는 정당대표, 정당특성 등을 자세히 물어 보고,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하도록 함	
11	◇ 용어 정의 ▶ 앞으로 정권을 잡을 능력이 있는 정당 :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집권할 능력을 말함 ◇ 유의사항 • 차기 대선에서는 현재와 다른 정당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테지만, 그래도 현재를 중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09	(계속)	심으로 응답 범주에 나와 있는 정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종용해야 함
	14	◇ 용어 정의 ▶ 한국의 정치 상황: 국내의 정치 상황을 의미함
	17	◇ 유의사항 • 각각의 정치적·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지난 1년이나 그보다 오래된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향도 묻고 있음 • 진정서, 시위, 집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응답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프로빙을 참고하여 차근차근 설명하고 빠짐없이 응답을 얻어낼 것
	22	◇ 유의사항 • 신문: 전통적인 활자 신문이 아닌 신문 형태(온라인 신문 등)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응답자가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포함되나'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잘 대답해줘야 함
	23	◇ 유의사항 • TV: 인터넷, DMB 등으로 보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33	◇ 유의사항 • 각각의 문항이 서로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 두 개의 성격특성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답해야 하는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임. 조사원은 둘 중 하나만을 가지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답해야 함을 응답자에게 주지시킬 것 • 참고로 각 성격 특성들의 영어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향적이다(extraverted). 적극적이다(enthusiastic). 2. 비판적이다(critical). 논쟁을 좋아한다(quarrelsome). 3. 신뢰할 수 있다(dependable). 자기 절제를 잘한다(self-disciplined). 4. 근심 걱정이 많다(anxious). 쉽게 흥분한다(easily upset). 5.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다(open to new experiences). 복잡다단하다(complex). 6. 내성적이다(reserved). 조용하다(quiet). 7. 동정심이 많다(sympathetic). 다정다감하다(warm). 8.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disorganized). 덩벙댄다(careless). 9. 차분하다(calm). 감정의 기복이 적다(emotionally stable). 10. 변화를 싫어한다(conventional). 창의적이지 못하다(uncreative).
	34-36	◇ 유의사항 • 가족관련 설문: 「표본지역별 면접진행 기록표」 안에 들어 있는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를 참조하면서 응답내용에 일관성이 있도록 주의함 ※ 34+35+36 응답의 합계는 37번 가구표의 총 가구원 수와 일치해야 함
	34	◇ 용어 정의 ▶ 동거 가족: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고 응답자 자신도 동거 가족 수에 포함됨. 동거 가족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한 다음의 각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함 a) 평소 함께 사는 데 짧은 시간동안(4-5개월 이내) 출장, 연수, 입원 등의 이유로 출타 중인 가족도 포함됨 b) 6개월 이상 장기간 출타 중인 가족(군복무중인 자녀(출퇴근하는 군인인 경우는 제외), 취학, 취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 병원 혹은 요양원 등에 기거 중인 가족 등)은 포함되지 않음 c) 평소 함께 살지 않는데 잠시 집에 와 있는 가족(예: 타지역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의 방학 중 방문, 휴가 나온 자녀, 잠시 방문 중인 친척 등)은 포함되지 않음 d) 주말 부부의 경우처럼 평소에는 따로 살고 주말에만 와 있는 가족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e) 함께 살고 있는 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경우는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동거 가족에 포함시키고, '가족'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36번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시키도록 함
	35	◇ 용어 정의 ▶ 별거 가족: 여기서 '별거'란 혼인상태로서의 별거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취학, 입대, 취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6개월 이상) 따로 사는 가족을 말함 a)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 및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손녀는 별거 가족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므로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 정보는 37번 가구표에도 기입해서는 안 됨 b) 역으로 응답자 자신이 결혼 후 분가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등의 원가족은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 않음. 이 경우도 37번 가구표에 기입해서는 안 됨 c) 응답자가 결혼한 것은 아니나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산 지 꽤 오래 된 경우에 원가족을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달림 d) 응답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거하는 자녀가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달리고,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에는 배우자도 별거 가족에 포함됨 e) 자녀가 응답자이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여서 함께 살지 않을 때, 그 부모가 별거 가족에 포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09	(계속)	합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달림. 부모가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에는 별거 가족에 포함됨
	36	<p>◇ 용어 정의</p> <p>▶ 가족 외 동거자: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의 '동거'가 아니라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친구, 직장 동료, 하숙생, 가사 도우미, 간병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표본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함. 친척(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가족'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에 따라 해당 항목에 맞게 포함시키도록 함</p>
	37	<p>◇ 유의사항</p> <p>• 가구표: 앞의 34, 35, 36번 문항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구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을 기입해야 함.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응답자를 설득하면서 응답을 모두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이 질문들의 응답 범주는 '4) 혼인상태' 설문을 제외하고는 읽어 주는 보기가 아님을 명심하도록 함</p> <p>1) 응답자와의 관계:</p> <p>a) 가구원 번호 1번은 응답자임. 1번에 다른 가구원을 적지 않도록 주의함</p> <p>b) 응답자와의 '관계'에는 각 가구원이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글로 쓰는 것임. 예를 들어 응답자가 기혼 여성이고, 시동생이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시동생은 '삼촌'이 아니라 '남편의 형' 혹은 '남편의 동생' 등으로, 부모일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인지 '배우자의 부모'인지 등으로 정확하게 써 줘야 함</p> <p>c)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가 몇 째 자녀인지를 물어 보고 해당 되는 보기를 적어야 함</p> <p>d) 보기의 "(26) 돌봐주는 사람"은 응답자가 돌봐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원 중에 누군가를 돌봐 주기 위해서 현재 그 가구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함</p> <p>e) (77) 기타(누구:)는 다른 응답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을 기입하는 난으로 응답자가 말하는 것을 조사원이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함</p> <p>3) 나이: 조사 시점 당시 만 나이를 말함. 응답자가 가구원의 나이를 정확히 모를 때는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띠를 물을 때는 대략의 연령대를 물어야 함) 등을 물어 보던가 해서 무응답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함</p> <p>4) 혼인상태: 응답자가 대답을 꺼릴 수도 있는 질문임. 특히, 별거나 이혼의 경우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때는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응답을 받아내도록 주의함. 혼인상태 응답 범주는 읽어 주는 보기임</p> <p>5) 동거여부: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의 '동거'가 아니라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함. 함께 살고 있으면 '동거',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44번 '별거 가족'에 포함된 사람) '비동거'임. 응답자는 무조건 '동거'에 해당함</p> <p>6) 비동거 사유: (04) 응답자 취학, (05) 응답자 취업 보기는 응답자 자신이 취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런 경우에는 (01)취학, (02)취업으로 체크해서는 안 됨. (01)~(05)의 응답 범주에 해당 되지 않는 비동거 사유는 (77)기타(무엇:)에 자세히 적도록 함</p> <p>7) 취업 여부: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에 해당함. 여기에는 임시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소규모 농사(농사를 통해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됨</p> <p>8) 미취업 사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서 표에 제시된 응답범주를 참고하여 우선 정확히 글로 기입하고, 확실한 보기 넘버를 기입하도록 함. 강조하건대, 보기 넘버를 기입하는 것보다 정확히 글로 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함</p> <p>(1) 학령미달: 만 7세 이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미취업사유임</p> <p>(2) 재학: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의 미취업사유를 말함(사설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p> <p>(5) 질병: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함</p> <p>(6) 심신장애: 선천적인 장애라던가,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혹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능력이 불완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p> <p>(9) 은퇴: 정년이 되어서 은퇴한 것이 아니라 직장의 구조조정, 건강·본인이 그 일을 더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일 계획 등의 개인 사정, 혹은 집안 사정, 직장사정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된 경우를 말함</p> <p>(10) 정년퇴직: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를 말함</p> <p>(11) 취업준비: 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예: 취업 정보 수집,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등)</p> <p>(12) 공부중: 취업 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공부를 말함(예: 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에 위한 공부(예: 재수생, 편입생, 유학 준비자 등))</p>
38	<p>◇ 유의사항</p> <p>• 가구주: 한 가구의 대표자를 말함. 세대주나 호주가 아니어도,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될 수 있음. 가구주가 누구인지는 '응답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답</p>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계속)	해야 하고, 해당되는 사람을 가구표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 골라 적도록 함
	39-43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준 설문 a) 간혹 옛날의 학교 시스템(소학교, 보통학교, 전문학교 등)을 말하는 응답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 조사원이 임의로 응답 보기를 골라서 체크해서는 안 되고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연구소에서 검토할 때 수정할 것임 b) 졸업/중퇴/재학 중 구분 할 것: 중퇴인 경우나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몇 학년 때 중퇴 혹은 재학중인 지를 물어야 함. 이 문항들은 나중에 '교육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하고, 교육년수는 연구자의 분석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퇴/재학학년 문항에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
	40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답자는 반드시 답해야 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재학생·중퇴자·졸업자 모두 답하게 할 것
	44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관련 문항: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사임. 내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조사원은 사전에 이 부분의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숙지하여 정확한 응답을 빠짐없이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때로 응답자의 응답이 보기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조사원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 • '수입이 있는 일': a) 일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던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① 그렇다"에 해당함 b) 임대소득자처럼 하는 일이 없이 건물, 가게 등을 임대해 주고 세를 받으면 "②아니다"에 해당되고 52.19 문항에서 근로소득 외 월평균 소득에 소득 내용을 기입하도록 함. 그러나 사무실을 가지고 빌딩관리 등을 포함하는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분류함
2009	44.1	<p>◇ 용어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정부 기관, 회사, 학교, 학원, 서비스업체 등, 직장에 취직해서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를 말함(과외선생님, 파출부의 경우에는 '고용'이 아니라 '자영업'에 속하나 만약에 인력단체에 소속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다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함)
	44.2-44.8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집」의 《프로빙 지침》을 참고하여 설명해 줄 것
	44.15 44.16 44.18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관련 질문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a)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간혹 연봉 혹은 1년 소득을 적는 조사원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기입) b)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종용해 봄
	45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및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 관련 질문: 이 질문은 응답자의 직업을 알아보는 질문임.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정확한 직업 정보를 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질문임. 조사원은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집」에 들어 있는 《산업분류표》와《직업분류표》를 사전에 꼼꼼히 읽고 숙지한 후에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응답을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함 a) 45번 설문에서 설문 방법의 제 1 원칙은 "가능하면 자세히 물어 본다"임
	45.1	<p>◇ 용어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직종: 하는 일의 분야(예: 농업, 임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판매 소매업, 기타 소매업, 도매업, 숙박업 등)를 물어 보는 것임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은 '어떤 산업 혹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라고 물어 보고,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세요?'라는 식으로 풀어서 물어 볼 것. 《산업분류표》를 보면, 산업/직종명이 다양함을 알 수 있음. 응답자가 종사하는 분야를 정확히 받아내야 함. 예) '제조업'이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인지 물어야 함
	45.2	<p>◇ 용어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위 및 업무내용: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 보는 것임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이다: 어떤 종류의 사무인지 구체적으로, 비서인지, 경리를 맡는지, 대금을 수납하는 일인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09	(계속)	<p>지, 고객상담 일인지 등 자세히 알아 낼 것.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비서', '회계사무원', '대금수납 관련 사무원', '고객안내 사무원' 등으로 달리 구분됨</p> <p>- <u>생산직이다</u>: 무엇을 하는 작업인지 구체적으로. 쇠파이프를 용접하는 일인가, 쇠파이프 원료를 가열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일인가, 다 만들어진 제품을 포장하는 일인가 등.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금속 용해원', '금속가열처리장치 조작원', '수동포장 노동자' 등으로 달리 구분됨</p> <p>- <u>이동통신 회사에서 일한다</u>: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관리자라면 어떤 부서(연구개발, 인사, 광고, 생산 등)의 무슨 직급(이사, 부장, 과장, 대리 등)의 관리자인지, 혹은 비서직인지, 생산직인지, 아니면 가구를 방문해서 통신선을 설치하는 기사인지 등.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달리 구분됨</p> <p>- <u>식당에서 일한다</u>: 사장님인지,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지, 설거지 일만 하는지, 배달일만 하는지 등.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응답자의 직업이 달리 구분됨</p>
	46	◇ 유의사항
	47	● 배우자의 일 관련 문항: 응답자의 일 관련 문항과 동일한 내용. 위의 내용 참조
	48	◇ 유의사항
		● 가구소득: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a)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농업인 경우 연간 산출물을 얘기할 때가 많은데 이 때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할 것)
		b)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종용해 봄
		c) 노인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 '수입 없다', '적자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음. 이때는 '자녀분들이 후 용돈을 주시나요?', '채소를 주위에 파시지는 않나요?' 등의 프로빙을 시도해서 응답을 얻어내도록 함
	ISSP 「사회불평등」 모듈 설문	
	53	◇ 유의사항
	58	● 직업별 월평균 수입(실제와 당위)
		- 53번은 해당 직업별 월평균 수입이 실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짐작하는 대로 응답하도록 묻는다. 이때 월평균 수입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으로 일반적인 말하는 연봉 개념이되 한 달 수입 기준
	- 이와 유사한 58번은 실제 수입이 아니라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해당 직업별 월평균 수입이 얼마가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당위를 묻는 것이다. 만약 응답자가 '앞의 질문과 같은 것 아닌가'라고 하면, 실제 수입과 당위 수입이라는 핵심적 차이를 설명하면서 응답을 이끌어 냄	
54	◇ 유의사항	
71	● 본인 성취 노력	
	- 54번은 응답자가 직무나 일에 있어서 성취하기 위한 자세	
	- 71번은 응답자가 15세 때 즉 학교 생활에서 학업 성취를 위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여부	
55	◇ 유의사항	
	● 성공 요인: 제시된 여러 사항들이 각각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기	
56	◇ 유의사항	
66	● 본인 보수의 정당성	
	- 56번은 응답자 생각에 본인이 받아야 할 보수보다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 66번은 응답자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소득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즉,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응당한 소득인가의 질문	
	※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혼란스러워 하거나 '앞에서 물어 놓고 왜 또 물어 보냐'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a) 56번은 본인 보수/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충분성, 66번은 본인 능력과 노력에의 응당성이라는 차이가 있음을 설명, b) '같이 보이지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음	
57	◇ 유의사항	
59	● 사회 공정성: 우리 사회의 기회 공정성	
	● 정부 역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부 역할 질문	
60.1	◇ 유의사항	
60.2	● 세금 공정성	
	- 60.1번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조세 부담율	
	- 60.2번은 현재 한국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적절성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09	61.1 61.2	◇ 유의사항 ● 기회 공정성 :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더 나은 의료 혜택과 자녀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
	63	◇ 유의사항 ● 집단 갈등 : 한국 사회에서 집단간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한가의 정도. 이때, 집단 간 차이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인지하는가를 묻는 것임
	63.1 63.2	◇ 유의사항 ● 사회 계층 : 본인의 사회 계층을 1점(최하층)부터 10점(최상층)으로 응답 - 63.1번은 본인이 현재 속한 계층을 기준 - 63.2번은 응답자 성장기 가족 계층을 기준
	64	◇ 유의사항 ● 사회 이동 : 응답자의 현재 직업과 응답자가 15세(중학생 시절) 때 아버지 직업 지위를 비교 평가
	65	◇ 유의사항 ● 소득 결정 요인 : 제시된 요인들이 일반적으로 소득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가의 질문
	67.1 67.2	◇ 유의사항 ● 사회 계층 유형 : 제시된 사회 유형 그림(보기카드) 가운데 67.1번은 현재의 한국 사회 유형이 어떠한가를 67.2번은 한국 사회가 어떤 유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68.1 68.2	◇ 유의사항 ● 아버지 직업 : 응답자 성장기 아버지가 일했던 노동 부문과 구체적 직업, 산업 물어보기 - 부문(사기업, 정부, 자영업 부문)의 구분은 직장의 소유 주체와 관련이 된다. 개인이나 민간 법인이 소유한 기업인가, 중앙 및 지방 정부 소속 기관인가, 본인이 스스로 운영하는 업체인가에 따라 구분됨. 가령 사기업 부문은 민간의 자본을 출자해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인에 의해 영위되는 일체의 개별 경제부문을 말함 - 교사의 경우 국공립 학교에 재직하면 정부 부문에, 사립학교 교사라면 사기업 부문에 해당 - 정확한 직업(직종, 산업, 직위 등) 조사를 위해서는 [2009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집]에 실린 <산업>, <직업> 분류표를 숙지
	69.1	◇ 유의사항 ● 어머니 경력 단절 : 응답자 성장기에 어머니의 직업 유무와 이직 시점
	69.2 69.3	◇ 용어 정의 ▶ 어머니 직업 : 응답자 성장기 어머니가 일했던 노동 부문과 구체적 직업, 산업
	70	◇ 유의사항 ● 문화 자본 : 응답자가 15세 때 가족이 살던 집에 책이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만약 응답자가 혼자 하숙이나 자취를 했을 경우 하숙방이나 자취방은 해당되지 않음
	72.1 72.2	◇ 유의사항 ● 정규 교육 마친 후 첫 번째 일 : 응답자가 정규교육을 마친 뒤에 한 첫 번째 일 - 여기서 정규 교육은 정식으로 규정된 학제와 교육 강령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원)) 등에서 받은 교육을 의미. 여기에 야간 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에 등록한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음
	73	◇ 유의사항 ● 주관적 계급 인식 : 6개 계급 분류 가운데 본인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계급
	74.1	◇ 유의사항 ● 부동산 재산(집) : 응답자와 응답자의 직계 가족 중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가구원(37번 가구표 상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를 판다면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이때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부채는 모두 제함 - 여기서의 부채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이 집이나 아파트 등 집을 구입하기 위하여 빌린 돈을 의미하며, 주택융자금, 전세보증금, 대출 등이 포함 - 계산법이 다소 복잡하고, 재산에 대한 질문이라 민감할 수 있다. 조사원은 계산법에 대해 숙지하고(프로빙 참고),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유출될 우려가 없음을 거듭 강조
	74.2	◇ 유의사항 ● 금융 자산 : 응답자와 응답자 직계 가족 중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가구원(37번 가구표 상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 저축, 증권, 채권 등을 현금으로 환산 후 거기서 부채(집을 사기 위해 빌린 부채 제외)를 제하고 나면 얼마나 남는가. 이 질문 역시 조사원이 계산법을 숙지하여야만 차질 없는 조사 가능(프로빙 참고). - 여기서의 부채는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을 제외하고, 개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총액을 의미 - 증권(주식 등)의 경우는 구입 당시 구매액이 아니라 조사 당시의 시세평가액으로 조사 - 적금이나 계돈의 경우는 조사 시점까지 불입(납부)한 총액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09	75	◇ 유의사항 ● 기회 불평등 : 교육, 취업, 승진, 법 등 제시된 사항별 평등 또는 불평등 정도. 이때 '지역 간'은 지역 간(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상도와 전라도)에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등/불평등한 정도
	76	◇ 유의사항 ● 사회경제적 성공도 : 본인이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대한 주관적 인식.
	77	◇ 유의사항 ● 직업 위세 : 제시된 30개 직업별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78	◇ 유의사항 ● 동일노동 임금 결정요인 : 동일한 노동을 할 때 제시된 조건별(가령 근속 년수, 교육 수준, 성별, 연령 등)로 보수를 더 받는 것이 당연한가에 대해 응답자의 의견
	79 80	◇ 유의사항 ● 가족관련 일의 수행과 결정 주체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 - 자녀 훈육 및 교육: 자녀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는다(비해당). 다만 자녀가 모두 장성하거나 결혼 후 분가해서 자녀 훈육 및 교육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옛날에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했는지 여부 - 본인 부모님 지원: 응답자가 고아이거나, 결혼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비해당. 다만 응답자가 결혼한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생존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기
	특별 주제 「형평과 공정성 V」 모듈 설문	
	44.1	◇ 유의사항 ● 임금근로자의 판단 시 유의사항 1) 기본적으로 Q.44.1에서 '① 피고용인'이라고 답변한 경우에 해당함 2) 임금근로자란 일정한 직장에서 장기 혹은 단기 고용자로 사용자와의 계약관계를 전제로 함 3) 동일한 직업(예: 과외선생님)의 경우: 보통 학원강사는 자영업이나 회사의 소개로 과외를 하게 되고 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됨
92-101	◇ 유의사항 ● 직장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질문은 임금근로자에게만 해당됨	
반복 핵심 설문		
2010	2	◇ 유의사항 ● 총 12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의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 용어정의 ▶ 교육계 : 교육이나 교육사업과 관계가 있는 분야 ▶ 중앙정부부처 : 전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 ▶ 청와대 :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기관 ▶ 학계 : 학문을 연구하는 사회 또는 학자의 사회, 주로 학술 및 과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
	7-9	◇ 유의사항 ● 응답자의 지지/투표 정당을 묻는 문항으로 시기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 <문항 7>: 현재 지지하고 있는 정당 - <문항 8-1>: 2007년 대통령 선거시 투표한 정당 및 그 정당의 후보 - <문항 9-1>: 2010년 올해 광역단체장 선거시 투표한 정당 ● 각 문항별 응답보기(66)은 응답자가 직접 말하는 개방형 범주로, 응답자의 말을 세심히 듣고, 정확한 정당명을 기입하되, 응답자가 정당명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정당대표, 정당특성 등을 자세히 묻고 ,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 ● <문항 8-1>과 <문항 9-1>의 응답보기(88)은 투표장을 방문하여 투표는 했지만 아무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고 기권표 를 던진 경우를 말함
	10	◇ 유의사항 ●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 용어정의 ▶ 진보적 :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려는 입장 ▶ 보수적 :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유지하려는 입장
	25-28	◇ 유의사항 ● 일반가구 만을 조사대상 가구로 하되, 비일반가구(시설 등)내 주택 은 포함함 - 일반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의 경우 개별 호실은 각각 일반 가구로 취급 - 비일반가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내의 주택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0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같이 할 경우(기준: 경제적 독립여부) 가구원 리스트에 포함됨 ☞ 식구(食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하여 분가한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 -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단독(개별) 가구이므로, 가구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음 ※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형제/자매·친인척·자취생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 • 「표본지역별 면접진행 기록표」 안에 들어 있는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를 참조하면서 응답내용에 일관성이 있도록 주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26+27+28 응답의 합계가 문항 29번 가구표의 총 가구원수와 일치해야 함
	26	<p>◇ 용어정의</p> <p>▶ 동거가족수: 가족 중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며, 응답자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수를 말함</p> <p><포함대상></p> <p>a) 평소 함께 살고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6개월 미만) 출장, 휴가, 연수, 입원, 출산 등의 이유로 출타 중인 가족은 포함</p> <p>b) 함께 살고 있는 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경우,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동거 가족에 포함시키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시킴</p> <p><제외대상></p> <p>a) 6개월 이상 장기간 출타 중인 가족(군복무 중인 자녀[출퇴근하는 군인 제외], 취학, 취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 병원, 혹은 요양원 등에 기거 중인 가족, 감옥 입소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별거 가족</p> <p>b) 평소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잠시 집에 와 있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의 방학 중 방문, 휴가 나온 자녀 ☞ 별거 가족 -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이출할 예정인 사람(출산 전·후에 친정에 와 있는 자녀, 또는 잠시 놀러와 있는 경우)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 잠시 방문 중인 친척 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p> <p>c) 주말부부처럼 평소에는 따로 살고 있지만, 주말에만 와 있는 가족의 경우 ☞ 별거 가족</p>
	27	<p>◇ 용어정의</p> <p>▶ 별거가족수: 혼인상태의 별거가 아니라 평소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취학, 입대, 취업, 감옥입소 등의 이유로 장기간(6개월 이상) 따로 사는 가족의 수임</p> <p><포함대상></p> <p>a)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혼자 자취하는 대학생의 경우 본가(부모가 거주하는 집) 가족들</p> <p>b) 취업 목적으로 부부, 가족원(자녀 등)이 분거 상태에서 별거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 (분거) 배우자, 자녀 또는 가족들 모두 별거가족에 해당</p> <p><제외대상></p> <p>a)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손자녀는 별거 가족에서 제외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b) 응답자가 결혼 후 분가한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부모 등 원가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대상></p> <p>a) 응답자가 결혼한 것은 아니나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산지 꽤 오래된 경우에 원가족을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b) 응답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거하는 자녀가 포함되는 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는 별거 가족에 포함</p> <p>c) 자녀가 응답자이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여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 그 부모가 별거 가족에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 부모가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부(모)는 별거 가족에 포함</p>
	28	<p>◇ 용어정의</p> <p>▶ 가족 외 동거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의 동거가 아닌, 친구, 직장 동료, 하숙생,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표본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p> <p><포함대상></p> <p>a)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하숙생이나 종업원 등은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p> <p>b)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응답자와 함께 자취생활하는 친구/직장 동료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가가족은 별거 가족수에 포함 </p> <p><제외대상></p> <p>a) 주인가구와 별도로 숙식하는 종업원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b) 기숙사, 복지시설 등 시설 내에 거주하는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가 조사 대상일 경우, 입소자는 제외 ☞ 비밀반가구 제외 원칙에 따름</p>
29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의 문항 26, 27, 28번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구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각 사람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을 기입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설득할 것 • 응답자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번호 1번은 응답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기입하는 것임을 명심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0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와의 관계에는 각 가구원이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글로 쓰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응답자가 기혼 여성일 때 시동생 ⇔ 남편의 형 or 남편의 동생 ※ 사례2: 응답자가 기혼 남성일 때 부모 ⇔ 자신의 부모 or 배우자의 부모 -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를 묻고 해당되는 보기를 적음 - 《보기》에서 “(26) 돌봐주는 사람”은 가족원 중 누군가를 돌봐주기 위해 현재 해당 가구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77)기타(누구:)는 다른 응답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을 기입하는 난으로 응답자가 말하는 것을 조사원이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함 ● 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시점 당시 만 나이 - 응답자가 가구원의 만 나이를 정확히 모를 때는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 등을 물어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혼인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나 이혼의 경우 응답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응답을 받아내도록 주의함 ● 동거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의 ‘동거’가 아니라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함 - 함께 살고 있으면 ‘동거’,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27번 ‘별거 가족’에 포함된 사람) ‘비동거’임. 응답자는 무조건 ‘동거’에 해당함 ● 취업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에 해당함 - 임시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소규모 농사(농사를 통해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됨 ● 미취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서 표에 제시된 응답범주를 참고하여 우선 정확히 글로 기입하고, 확실한 보기 번호를 기입하도록 함 ☞ 보기 번호를 기입하는 것보다 정확히 글로 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령미달: 만 7세 이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미취업사유임 (2) 재학: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의 미취업사유를 말함(사설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 (5) 질병: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함 (6) 심신장애: 선천적인 장애라던가,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혹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능력이 불완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9) 은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의 일 이상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함 (10) 정년퇴직: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를 말함 (11) 취업준비: 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예: 취업 정보 수집, 취업을 위한 시험준비, 고시 준비 등) (12) 공부중: 취업 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공부를 말함(예: 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학을 위한 공부(예: 재수생, 편입생, 유학 준비자 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가구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구의 대표자를 말함 ● 세대주나 호주가 아니어도,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될 수 있음 ● 가구주가 누구인지는 ‘응답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답해야 하고, 해당되는 사람을 가구표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 골라 적도록 함
	3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응답자, 배우자, 응답자의 부모 교육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혹 옛날의 학교 시스템(소학교, 보통학교, 전문학교 등)을 말하는 응답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 조사원이 임의로 응답 보기를 골라서 체크해서는 안 되고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연구소에서 검토할 때 수정할 것임 ● 졸업/중퇴/재학 중 구분 할 것: 중퇴인 경우나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몇 학년 때 중퇴 혹은 재학 중인 지를 물어야 함. 이 문항들은 나중에 ‘교육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하고, 교육년수는 연구자의 분석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퇴/재학학년 문항에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 ◇ 유의사항: “문항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답자는 반드시 답해야 하는 문항 ●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재학생·중퇴자·졸업자 모두 답하게 할 것
	36-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응답자 및 배우자의 취업상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사임 ● 내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조사원은 사전에 이 부분의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숙지하여 정확한 응답을 빠짐없이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 때로 응답자의 응답이 보기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조사원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0	(계속)	<p>는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p> <p>◇ 용어정의: '수입이 있는 일'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던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① 그렇다"에 해당함 • 임대소득자처럼 하는 일이 없이 건물, 가게 등을 임대해 주고 세를 받으면 "② 아니다"에 해당 <p>※ 관련 소득은 문항 36.16(배우자 38.14)의 '근로소득 외 월평균 소득'에 기입</p> <p>☞ 사무실을 가지고 빌딩관리 등을 포함하는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분류</p>
	36.1 38.1	<p>◇ 용어정의: '고용'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관, 회사, 학교, 학원, 서비스업체 등 직장에 취직해서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를 말함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과외선생님, 파출부의 경우에는 '고용(임금근로자)'이 아니라 '자영업'에 속함 <p>☞ 만약, 이들이 인력단체에 소속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기본급)을 받는다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p>
	36.2 36.9 38.2 38.8	<p>◇ 용어정의: '종사상지위'</p> <p>▶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직: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예정된 경우 <p>※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p>▶ 비임금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무보수로 도운 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 <p>※ 무급으로 동일 가구 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별도로 달리하는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 b)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p>※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자영자 또는 고용주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원을 둔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b)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p>※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36.3 36.10 38.3 38.9	<p>◇ 용어정의: '근로시간형태'</p> <p>▶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p> <p>▶ 전일제: 시간제 근로와는 달리, 일할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p>
	36.7 38.6	<p>◇ 용어정의: '기업형태'</p> <p>▶ 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철도, 우편, 수도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룸(예: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p> <p>▶ 공익기관: 학교, 병원, 방송사, 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사회전체 및 공공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p>
	36.15 38.13	<p>◇ 유의사항: 소득 관련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관련 질문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 <p>※ 간혹 연봉 혹은 1년 소득을 적는 조사원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
	37 39	<p>◇ 유의사항: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질문은 응답자의 직업(주된 일자리)을 알아보는 질문임 •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정확한 직업 정보를 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질문임 <p>◇ 용어정의: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p> <p>▶ 산업/직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는 일의 분야(예: 농업, 임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판매 소매업, 기타 소매업, 도매업, 숙박업 등)를 물어 보는 것임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0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어떤 산업 혹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라고 물어 보고,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세요?'라는 식으로 풀어서 물어 볼 것 ※ 산업/직종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종사하는 분야를 정확히 받아내야 함 예) '제조업'이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식료품을 만드는지 의복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인지 물어야 함 ▶ 직위 및 업무내용 -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 보는 것임 ☞ '하시는 일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계신지, 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라는 식으로 질문 할 것 ※ 응답자가 이 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응답을 받아내야 함 예) '교사'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구분과 정식 교사인지, 임시 교사인지, 보조 교사인지 등의 직위 정보가 필요함
	40	<p>◇ 유의사항: 가구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a)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시할 것 ※ 농업인 경우 연간 산출물을 얘기할 때가 많은 데 이때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할 것 b)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해 봄 c) 노인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 '수입 없다', '적자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음. 이때는 '자녀분들이 혹시 용돈을 주시나요?', '채소를 주위에 파시지는 않나요?' 등의 프로빙을 시도해서 응답을 얻어내도록 함
	ISSP 「환경」 모듈 설문	
	82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호: 국가의 책임 하에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노령, 실업, 빈곤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 ▶ 테러: 정치/종교/사상적 목적을 위해 민간인한테까지 무차별로 폭력행사를 하는 것 ▶ 빈곤: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뜻함 ▶ 핵폐기물 -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 핵종에 오염된 물질 ▶ 기후변화 - 지구의 세계적 규모의 기후 또는 지역적 기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10년에서부터 수백만 년의 기간 동안의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 변화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지구 내부의 작용이나 외부의 힘(예: 태양 복사의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 ▶ 유전자 변형 식품 -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로 보통 GMO 식품이라고 한다. 질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장기간 섭취할 경우, GMO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있음
	99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 화학물질공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학물질이 사용되거나 폐기되는 과정에서 자연 또는 인간에게 주는 피해를 말함
	105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 - 천연적으로 지하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로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가스에 한정함 ▶ 곡물로 만든 연료 - 콩기름·유채기름·폐식물기름·해조유(海藻油) 따위의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해서 만든 무공해 연료를 뜻함
	109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 -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 - 그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임
	EASS 「동아시아의 건강」 모듈 설문	
	41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으로 객관적인 건강 상태가 아닌 응답자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응답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0	42-47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건강상태, 신체 상태, 정신 상태, 통증 등으로 인한 일상, 직업 등에의 방해 정도를 질문 ※ 특히 43번, 44번 및 46번은 '지난 1달간'의 경험에 근거하여 응답을 받음 ● 문항 42-2에서 '여러 개의 계단 오르기'는 많은 계단들을 오르는 것을 말함 ● 문항 46은 감정에 대한 질문으로 감정, 정서, 기분 등의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간주
	49.1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혈압: 수축기 혈압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병원, 의원, 약국, 한의원, 한방 병원에서 혈압 검사를 하여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만 해당 ▶ 당뇨병: 혈중에 당이 많아 생기는 병으로 목이 마르고 오줌을 많이 누게 되고 피부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병으로, 병원(한의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질혈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등으로 말하기도 하며 운동을 하면 가슴에 누르는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병원(한의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만 해당 ▶ 호흡기 문제(천식, 만성 기침):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로, 평소에 기침, 가래가 잦아 숨쉬기가 불편하거나 잠을 잘 못자거나 일을 하는데 힘겨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천식(喘息)은 기관지에 경련이 일어나는 병으로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며 가래가 심함
	60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나 전문 시술가에 의한 치료 서비스만을 포함할 뿐, 집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뜸·부항을 직접 시행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항(附針): 부항 단지에 불을 넣어 공기를 희박하게 만든 다음 부스럼 자리에 붙여 부스럼의 고름이나 독혈을 빨아내는 일. 전통 동양 의학의 치료 기법 중 하나
	61-63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도구적 지지로 나뉘는데 정서적 차원은 개인적 문제나 고민을 들어 주는 등의 지지를 말하고, 경제적 차원은 돈을 주거나 빌려 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말하며, 도구적 차원은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 간호 등의 도움을 주는 것 ▶ 돌봄제공자(care taker):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을 보살피는 직업인으로, 베이비시터, 간병인, 활동보조인 등을 이룸. 만약 가족 구성원이 유료(국가로부터 지급 등)로 간병을 할 경우에는 보호제공자를 친지가 아닌 '전문직업인'으로 간주
	71-72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도박'을 과도하게 했던 경우는 3)도박 혹은 4)인터넷 게임 중에 하나를 선택 a) <u>일차 기준은 응답자의 응답(도박인지 인터넷 게임인지)</u> b)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고 할 경우에는,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이 주된 목적일 경우에는 3)도박에 포함되고, 단순히 흥미 위주의 게임으로 즐기는 인터넷 도박은 4)인터넷 게임에 포함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박(賭博, gambling):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로 내기·노름·박희(博戲)라고도 함. 형법 제246조 도박에 관한 처벌규정에 따르면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함
76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6번은 손/손목/손가락, 팔/팔꿈치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경험했는지를 면밀히 조사 a) 통증 부위 중 해당되는 모든 부위에 체크를 한 다음, 해당 통증 부위에 대한 여섯 가지 문항을 꼼꼼히 질문 b) 특히 3)번의 경우 아픈 정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음 ① 약한 통증: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해당부위를 쓰는 일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낌 ② 중간 통증: 해당부위를 쓰는 일을 할 때 통증이 있으나, 휴식을 취하면 괜찮음 ③ 심한 통증: 해당부위를 쓰는 일을 할 때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계속됨 ④ 매우 심한 통증: 통증 때문에 해당부위를 쓰는 일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움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 산재(산업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고로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당했을 때를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0	(계속)	일반적으로는 산업재해라 함 ※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 작업 전환 - 『진폐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진폐근로자 예를 들면, 노동부장관이 진폐근로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에 종사하도록 조치를 “작업전환조치”라 함
	78	◇ 용어정의 ▶ 류머티스 관절염 - 관절을 싸고 있는 얇은 막(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전신의 여러 관절을 침범하여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관절이 파괴되고 장애를 초래함 ※ 관절의 활막은 활액을 생성하여 관절의 연골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며 관절 운동시에 생겨나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얇은 막 ▶ 루푸스병(=전신 홍반성 루푸스) - 몸의 면역체계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자신 스스로의 세포를 잘못 공격하게 될 때 발생 -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 - 정확한 발병 원인은 잘 모르지만 유전적, 환경적, 호르몬적 인자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 통풍 - 혈액과 조직 내에 요산이 너무 많아지게 되어 생기는 병 - 통풍에서는 요산의 결정들이 관절들에 침착하여 통풍성 관절염이라는 관절염을 초래하고, 요산 결정들이 신장에 침범하면 신장 결석을 초래 ▶ 알코올 중독 - 술을 과도하게 마시므로써 개인, 가정, 직장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는데도 술을 계속 마시는 경우 - 스스로 술을 마시는 것을 조절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가 된 것을 이룸
	81	◇ 유의사항 ●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질문으로, 노동부에서 공포한(노동부 고시[노동부 2003-24호])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중 일부로 근골격계질환의 우려가 있는 작업인지를 조사하는 것
	특별 주제 「국가정체성과 이민 I」 모듈 설문	
	111	◇ 용어정의 ▶ 국적(國籍, nationality) - 특정한 국가 또는 독립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나타내는 법률용어 -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 이중국적(二重國籍):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 2010년 5월 국적법 개정안(법률 제10275호)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 2010년 5월 6일부터 선천적 이중국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한국인이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이중국적 유지 가능
	114	◇ 유의사항 ● 결혼이주 여성, 생산직, 전문직, 유학생 등 여섯 가지 이민자 유형별 증가 및 감소 희망에 대한 질문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설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같은 대답을 무성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조사원은 이 점을 유의하면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아 내도록 노력
	115	◇ 용어정의 ▶ 영주권(永住-權):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116	◇ 유의사항 ● 외국인 이민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인구학적 측면 등 다차원적으로 질문
	117	◇ 유의사항 ●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는 질문으로,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인, 유럽인 등 대상별로 7유형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각각의 찬성-반대를 질문 ● 동일한 패턴으로 설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같은 대답을 무성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조사원은 이 점을 유의하면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아 내도록 노력 ● 117 문항은 응답자가 직접 보면서 기입하여도 좋음 ※ 보가더스(E. Bogardus)의 사회적 거리 척도(social distance scale) - 특정 집단의 사람을 배우자, 친구, 이웃, 동료, 국민, 방문자 등으로 각각 받아들이는데 찬성 혹은 반대하는가를 물어서 측정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외국인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또는 편견 분석시 활용하는데, 항목 간 서열성이 있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방문 < 우리나라 국민됨 < 내 직장 동료 < 내 가까 이웃됨 < 나와 절친한 친구 < 내 자녀의 배우자 <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등 점차 가까운 거리, 수용-개방도를 나타냄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족(朝鮮族): 중국 땅에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중국 국적의 주민들 ▶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흔히 새터민, 탈북자 등으로 불림
	반복 핵심 설문	
20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6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의 프로빙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계: 교육이나 교육사업과 관계가 있는 분야 ▶ 중앙정부부처: 전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 ▶ 청와대: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기관 ▶ 학계: 학문을 연구하는 사회 또는 학자의 사회, 주로 학술 및 과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
	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지지/투표 정당을 묻는 문항으로 시기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12>: 현재(2011년 조사당시) 지지하고 있는 정당 - <문항 13>: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시 투표한 정당 - <문항 14>: 수권능력을 가진 정당 ● 각 문항별 응답보기(66)은 응답자가 직접 말하는 개방형 범주로, 응답자의 말을 세심히 듣고, 정확한 정당명을 기입하되, 응답자가 정당명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정당대표, 정당특성 등을 자세히 묻고,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 ● <문항 13-1>의 응답보기(88)은 투표장을 방문하여 투표는 했지만 아무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경우를 말함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프로빙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적: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려는 입장 ▶ 보수적: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유지하려는 입장
	3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구만을 조사대상 가구로 하되, 비일반가구(시설 등)내 주택은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의 경우 개별 호실은 각각 일반 가구로 취급 - 비일반가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내의 주택 ● 생계를 같이 할 경우(기준: 경제적 독립여부) 가구원 리스트에 포함됨 ☞ 식구(食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하여 분가한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 -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단독(개별) 가구이므로, 가구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형제/자매·친인척·자취생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 ● 「표본지역별 면접진행 기록표」 안에 들어 있는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를 참조하면서 응답내용에 일관성이 있도록 주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30+31+32 응답의 합계가 문항 33번 가구표의 총 가구원수와 일치해야 함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가족수: 가족 중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며, 응답자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수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함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평소 함께 살고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6개월 미만) 출장, 휴가, 연수, 입원, 출산 등의 이유로 출타 중인 가족은 포함 b) 함께 살고 있는 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경우,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동거 가족에 포함시키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시킴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6개월 이상 장기간 출타 중인 가족(군복무 중인 자녀[출퇴근하는 군인 제외], 취학, 취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 병원, 혹은 요양원 등에 기거 중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1	(계속)	인 가족, 감옥 입소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별거 가족 b) 평소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잠시 집에 와 있는 가족 - 타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의 방학 중 방문, 휴가 나온 자녀 ⇨ 별거 가족 -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이출할 예정인 사람(출산 전·후에 친정에 와 있는 자녀, 또는 잠시 놀러와 있는 경우)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 잠시 방문 중인 친척 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c) 주말부부처럼 평소에는 따로 살고 있지만, 주말에만 와 있는 가족의 경우 ⇨ 별거 가족
	31	◇ 용어정의 ▶ 별거가족수 : 혼인상태의 별거가 아니라 평소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취학, 입대, 취업, 감옥입소 등의 이유로 장기간(6개월 이상) 따로 사는 가족 의 수임 <포함대상> a)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혼자 자취하는 대학생의 경우 본가(부모가 거주하는 집) 가족들 b) 취업 목적으로 부부, 가족원(자녀 등)이 분거 상태에서 별거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 (분거) 배우자, 자녀 또는 가족들 모두 별거가족에 해당 <제외대상> a)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손자녀는 별거 가족에서 제외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b) 응답자가 결혼 후 분가한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부모 등 원가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대상> a) 응답자가 결혼한 것은 아니나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산 지 꽤 오래 된 경우에 원가족을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 b) 응답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거하는 자녀가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 ※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는 별거 가족에 포함 c) 자녀가 응답자이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여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 그 부모가 별거 가족에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 ※ 부모가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부(모)는 별거 가족에 포함
	32	◇ 용어정의 ▶ 가족 외 동거자 :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의 동거가 아닌, 친구, 직장동료, 하숙생,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표본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포함대상> a)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하숙생이나 종업원 등은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 b)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응답자와 함께 자취생활하는 친구/직장 동료의 경우 ※ 본가가족은 별거 가족수에 포함 <제외대상> a) 주인가구와 별도로 숙식하는 종업원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b) 기숙사, 복지시설 등 시설 내에 거주하는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가 조사 대상일 경우, 입소자는 제외 ⇨ 비일반가구 제외 원칙에 따름
	33	◇ 유의사항 • 앞의 문항 30, 31, 32번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구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각 사람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을 기입해야 함 ※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설득할 것 • 응답자와의 관계 - 가구원번호 1번은 응답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기입하는 것임을 명심 - 응답자와의 관계에는 각 가구원이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글로 쓰는 것임 ※ 사례1: 응답자가 기혼 여성일 때 시동생 ⇨ 남편의 형 or 남편의 동생 ※ 사례2: 응답자가 기혼 남성일 때 부모 ⇨ 자신의 부모 or 배우자의 부모 -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를 묻고 해당되는 보기를 적음 - 《보기》에서 “(26) 돌봐주는 사람”은 가족원 중 누군가를 돌봐주기 위해 현재 해당 가구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77) 기타(누구:)는 다른 응답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을 기입하는 난으로 응답자가 말하는 것을 면접원이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함 • 나이 - 조사시점 당시 만 나이 - 응답자가 가구원의 만 나이를 정확히 모를 때는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 등을 물어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혼인상태 - 별거나 이혼의 경우 응답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응답을 받아내도록 주의함 • 동거여부 -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의 '동거'가 아니라 현재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1	(계속)	<p>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살고 있으면 '동거',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27번 '별거 가족'에 포함된 사람) '비동거'임. 응답자는 무조건 '동거'에 해당함 <p>● 취업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에 해당함 - 소규모 농사(농사를 통해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됨 ※ 단,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수입이 있는 일을 할지라도 응답자 본인이 취업자가 아닌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 미취업자로 분류 <p>● 미취업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서 표에 제시된 응답범주를 참고하여 우선 정확히 글로 기입하고, 확실한 보기 번호를 기입하도록 함 ☞ 보기 번호를 기입하는 것보다 정확히 글로 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령미달: 만 7세 이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미취업사유임 (2) 재학: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의 미취업 사유를 말함(사실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 (5) 질병: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함 (6) 심신장애: 선천적인 장애라던가,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혹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능력이 불완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9) 은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의 일 이상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함 (10) 정년퇴직: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를 말함 (11) 취업준비: 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예: 취업 정보 수집,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등) (12) 공부중: 취업 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공부를 말함(예: 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에 위한 공부(예: 재수생, 편입생, 유학 준비자 등)
	34	<p>◇ 유의사항: 가구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구의 대표자를 말함 ● 세대주나 호주가 아니어도,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될 수 있음 ● 가구주가 누구인지는 '응답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답해야 하고, 해당되는 사람을 가구표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 골라 적도록 함
	35-39	<p>◇ 유의사항: 응답자, 배우자, 응답자의 부모 교육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혹 옛날의 학교 시스템(소학교, 보통학교, 전문학교 등)을 말하는 응답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 면접원이 임의로 응답 보기를 골라서 체크해서는 안 되고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연구소에서 검토할 때 수정할 것임 ● 졸업/중퇴/재학 중 구분 할 것: 중퇴된 경우나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몇 학년 때 중퇴 혹은 재학 중인 지를 물어야 함. 이 문항들은 나중에 '교육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하고, 교육년수는 연구자의 분석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퇴/재학학년 문항에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 <p>◇ 유의사항: "문항 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답자는 반드시 답해야 하는 문항 ● 전문대학/대학교/대학원 재학생·중퇴자·졸업자 모두 답하게 할 것
	40-43	<p>◇ 유의사항: 응답자 및 배우자의 취업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사임 ● 내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면접원은 사전에 이 부분의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숙지하여 정확한 응답을 빠짐없이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 때로 응답자의 응답이 보기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면접원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 <p>◇ 용어정의: '수입이 있는 일'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던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① 그렇다"에 해당함 ● 단, 수입이 있다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취업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업자로 취급(예를 들어, 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응답자가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미취업자로 취급) ● 임대소득자처럼 하는 일이 없이 건물, 가게 등을 임대해 주고 세를 받으면 "② 아니다"에 해당 ※ 관련 소득은 문항 40.14(배우자 42.13)의 '근로소득 외 월평균 소득'에 기입 ☞ 사무실을 가지고 빌딩관리 등을 포함하는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분류
	40.1 42.1	<p>◇ 용어정의: '고용'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관, 회사, 학교, 학원, 서비스업체 등 직장에 취직해서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를 말함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과외선생님, 파출부의 경우에는 '고용(임금근로자)'이 아니라 '자영업'에 속함 ☞ 만약, 이들이 인력단체에 소속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기본급)을 받는다면 고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1	(계속)	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
	40.2 40.8 42.2 42.8	<p>◇ 용어정의: '종사상지위'</p> <p>▶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직: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예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p>▶ 비임금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가족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자기에겐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무보수로 도운 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으로 동일 가구 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별도로 달리하는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 b)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자영자 또는 고용주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 - 고용원을 둔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b)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40.3 40.9 42.3 42.9	<p>◇ 용어정의: '근로시간형태'</p> <p>▶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p> <p>▶ 전일제: 시간제 근로와는 달리, 일할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p>
	40.6 42.6	<p>◇ 용어정의: '기업형태'</p> <p>▶ 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철도, 우편, 수도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룸(예: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p> <p>▶ 공익기관: 학교, 병원, 방송사, 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사회전체 및 공공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p>
	40.13 42.12	<p>◇ 유의사항: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관련 질문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혹 연봉 혹은 1년 소득을 적는 면접원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기입 ●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
	41 43	<p>◇ 유의사항: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질문은 응답자의 직업(주된 일자리)을 알아보는 질문임 ●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정확한 직업 정보를 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질문임 <p>◇ 용어정의: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p> <p>▶ 산업/직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는 일의 분야(예: 농업, 임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판매 소매업, 기타 소매업, 도매업, 숙박업 등)를 물어 보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어떤 산업 혹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라고 물어 보고,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세요?'라는 식으로 풀어서 물어 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직종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종사하는 분야를 정확히 받아내야 함 예) '제조업'이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식료품을 만드는지 의복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인지 물어야 함 <p>▶ 직위 및 업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 보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시는 일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계신지, 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라는 식으로 질문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이 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응답을 받아내야 함 예) '교사'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구분과 정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1	(계속)	식 교사인지, 임시 교사인지, 보조 교사인지 등의 직위 정보가 필요함
	44	<p>◇ 유의사항: 가구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경우 연간 산출물을 얘기할 때가 많은 데 이때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할 것 b)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해 봄 c) 노인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 '수입 없다', '적자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음. 이때는 '자녀분들이 혹시 용돈을 주시나요?', '채소를 주위에 파시지는 않나요?' 등의 프로빙을 시도해서 응답을 얻어내도록 함
	ISSP 「건강」 모듈 설문	
	58	<p>◇ 용어정의</p> <p>▶ 장기 이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이식(臟器移植)이란 어떤 조직 또는 장기의 파손된 기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조직 또는 장기를 옮기는 것이다. 다른 개체의 정상적인 장기나 조직을 떼어 내어서 질병이나 외상으로 손상된 부분에 이식함으로써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 심장, 신장, 간 따위를 주로 이식하는데 이식 후의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들이 발달함에 따라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다.
	59	<p>◇ 용어정의</p> <p>▶ 국적(國籍, national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국가 또는 독립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나타내는 법률용어 -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65	<p>◇ 용어정의</p> <p>▶ 대체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 의원 이외의 곳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건강보조식품 또는 식이요법, 지압, 단전 등의 모든 행위를 통칭 대체의학요법이라 함. 다만 2011 KGSS에서는 한의사, 한약사 등에 의한 의료 행위만 대체 의료에 포함
	74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항에서의 흡연 경험은 호기심으로 한두 번 피워본 것을 제외
	79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공공 의료 제도뿐 아니라 개인이 사적으로 가입한 민간 의료보험(私保險)을 포함
	특별주제 「시민권, 이타주의, 기부행위」 모듈 설문	
	83	<p>◇ 용어정의</p> <p>▶ 소수자 집단 [少數集團, minor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안에서 문화적·민족적·인종적으로 구별되는 특수 집단으로, 지배집단에 종속해 있는 집단을 가리키며 그 규모보다는 종속성이라는 성격이 소수집단을 규정 <p>▶ 불복종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불복종[市民不服從, civil disobedience]은 소극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이라고도 한다. 정부 또는 점령국의 요구·명령에 대하여, 폭력 등의 적극적인 저항수단을 취하지 않고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 주된 목적은 정부 또는 점령국으로부터 양보(또는 승인·용인)를 획득
	86	<p>◇ 용어정의</p> <p>▶ 국영 기업 [國營企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설립하여 관리·경영하는 기업으로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포함
	88	<p>◇ 용어정의</p> <p>▶ 대외 원조 [對外援助, foreign ai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국과 그 국민을 위한 자본·상품·용역의 국제적 공여. 공식적인 대외원조에는 첫째, 무상원조나 차관과 같은 현금 등의 자본공여, 둘째, 대개 인적 자원이나 기술설비의 형태로 증여되는 기술원조와 기술교육의 2가지 있음. 정상적인 경제원조는 원조대상국이 일정한 지속적 경제성장의 단계에 도달하면 원조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함
	89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로 UN은 2015년까지 대외 원조를 국민총소득의 0.7%로 확대할 것을 권고
	특별주제 「인권 의식 확산」 모듈 설문	
100	<p>◇ 용어정의</p> <p>▶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순 우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1	(계속)	<p>리말로 2005년부터 사용함. 새터민은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미래지향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정. 통일부는 공식적인 용어로 법률용어인 ‘북한 이탈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으로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함. 새터민 정착지원 제도는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취업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거주비보호제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p> <p>▶ 성적 소수자 - 성적 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등을 모두 포함</p> <p>▶ 집회·결사의 자유 -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회합 또는 결합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p>
	101	<p>◇ 용어정의</p> <p>▶ 법무부/검찰 - 법무부는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며, 검찰은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의 집행지휘·감독 기타 이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행정작용을 말하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검찰청으로 법무부 소속</p> <p>▶ 국가인권위원회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독립기구</p> <p>▶ 고용노동부 -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p>
	102	<p>◇ 용어정의</p> <p>▶ 유엔 -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UN).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뉘며, 주요기구와 전문기구·보조기구로 구성</p> <p>▶ 유럽연합(EU) -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p> <p>▶ 세계은행 - 세계은행(World Bank)은 개발도상국에 대부분을 제공하는 국제 금융 기관으로, 1946년 8월에 발족. 이 기관은 1944년 7월 브레턴우즈 협정에 기초하여 설립. 이 중에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① 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②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③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 원조를 제공함</p>
	104.1	<p>◇ 용어정의</p> <p>▶ 시민단체 - 대부분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분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를 뜻함. 시민사회단체로도 불림</p>
	특별주제 「연령주의」 모듈 설문	
	112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번 문항에서 ‘스스로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112번을 질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13번을 질문할 것
115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에서 고려자는 응답자가 접하게 되는 일반적인 노인들을 말한다. 그러나, 응답자가 자신의 가족 중에 있는 노인들도 포함되는가를 묻을 경우에는 포함됨을 알려주도록 한다. 	
115.1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5번에서 응답범주 ①에 응답했을 경우에는 116번으로 이동하여 질문하고, 나머지 응답 범주에 응답한 경우(②-⑤)에만 115-1번에 대해 질문할 것 	
2012	반복 핵심 설문	
	4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6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의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p>◇ 용어정의</p> <p>▶ 교육계: 교육이나 교육사업과 관계가 있는 분야</p> <p>▶ 중앙정부부처: 전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p>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2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기관 ▶ 학계: 학문을 연구하는 사회 또는 학자의 사회, 주로 학술 및 과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
	12-14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지지/투표 정당을 묻는 문항으로 시기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12>: 현재(2012년 조사당시) 지지하고 있는 정당 - <문항 13>: 2012년 국회의원총선거시 투표한 정당 - <문항 14>: 수권능력을 가진 정당 ● 각 문항별 응답보기(66)은 응답자가 직접 말하는 개방형 범주로, 응답자의 말을 세심히 듣고, 정확한 정당명을 기입하되, 응답자가 정당명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정당대표, 정당특성 등을 자세히 묻고,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 ● <문항 13-1>의 응답보기(77)은 투표장을 방문하여 투표는 했지만 아무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경우를 말함
	15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적: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려는 입장 ▶ 보수적: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유지하려는 입장
	18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사회복지지출이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지출: 가구와 개인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동안 공적제도에 의해 조달되는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지출은 공적 제도에 의한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므로 가구 간 이전이나 개인의 후원 등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근로에 대한 임금,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당, 휴일수당, 보너스 등은 사회복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 사회적 복지지출은 현금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 수단으로 제공되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급여: 연금, 출산수당, 공공부조에서 제공되는 생계급여 등 ※ 사회서비스: 보육서비스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등 ※ 조세 수단: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감면혜택(한국에는 부녀자공제 및 자녀교육비 공제 등이 있음)과 사적 의료보험 혹은 사적연금저축에 대한 세금공제 등
	32A 32B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여러 직업에 대한 짐작되는 소득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 소득은 실제 버는 액수와는 상관없이 짐작되는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혹 연봉 혹은 1년 소득을 적는 면접원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기입 ● 각 직업별 세금을 포함한 짐작되는 실제소득을 물어보고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응답을 얻어내야 함
	37- 39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구만을 조사대상 가구로 하되, 비일반가구(시설 등)내 주택은 포함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의 경우 개별 호실은 각각 일반 가구로 취급 - 비일반가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내의 주택 ● 생계를 같이 할 경우(기준: 경제적 독립여부) 가구원 리스트에 포함됨 ⇨ 식구(食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하여 분가한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 -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단독(개별) 가구이므로, 가구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형제/자매·친인척·자취생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 ● 「표본지역별 면접진행 기록표」 안에 들어 있는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를 참조하면서 응답내용에 일관성이 있도록 주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30+31+32 응답의 합계가 문항 33번 가구표의 총 가구원수와 일치해야 함
	37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가족수: 가족 중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며, 응답자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수를 말함 <p><포함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 함께 살고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6개월 미만) 출장, 휴가, 연수, 입원, 출산 등의 이유로 출타 중인 가족은 포함 함께 살고 있는 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경우,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동거 가족에 포함시키되, 그렇지 않은 경우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2	(계속)	<p>에는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시킴 <제외대상> a) 6개월 이상 장기간 출타 중인 가족(군복무 중인 자녀[출퇴근하는 군인 제외], 취학, 취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 병원, 혹은 요양원 등에 기거 중인 가족, 감옥 입소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별거 가족 b) 평소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잠시 집에 와 있는 가족 - 타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의 방학 중 방문, 휴가 나온 자녀 ⇨ 별거 가족 -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이출할 예정인 사람(출산 전·후에 친정에 와 있는 자녀, 또는 잠시 놀러와 있는 경우)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 잠시 방문 중인 친척 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c) 주말부부처럼 평소에는 따로 살고 있지만, 주말에만 와 있는 가족의 경우 ⇨ 별거 가족</p>
	38	<p>◇ 용어정의 ▶ 별거가족수: 혼인상태의 별거가 아니라 평소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취학, 입대, 취업, 감옥입소 등의 이유로 장기간(6개월 이상) 따로 사는 가족의 수입 <포함대상> a)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혼자 자취하는 대학생의 경우 본가(부모가 거주하는 집) 가족들 b) 취업 목적으로 부부, 가족원(자녀 등)이 분거 상태에서 별거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 (분거) 배우자, 자녀 또는 가족들 모두 별거가족에 해당 <제외대상> a)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손자녀는 별거 가족에서 제외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b) 응답자가 결혼 후 분가한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부모 등 원가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대상> a) 응답자가 결혼한 것은 아니나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산 지 꽤 오래 된 경우에 원가족을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 b) 응답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거하는 자녀가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 ※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는 별거 가족에 포함 c) 자녀가 응답자이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여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 그 부모가 별거 가족에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 ※ 부모가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부(모)는 별거 가족에 포함</p>
	39	<p>◇ 용어정의 ▶ 가족 외 동거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의 동거가 아닌, 친구, 직장동료, 하숙생,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표본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포함대상> a)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하숙생이나 종업원 등은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 b)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응답자와 함께 자취생활하는 친구/직장 동료의 경우 ※ 본가가족은 별거 가족수에 포함 <제외대상> a) 주인가구와 별도로 숙식하는 종업원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b) 기숙사, 복지시설 등 시설 내에 거주하는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가 조사 대상일 경우, 입소자는 제외 ⇨ 비일반가구 제외 원칙에 따름</p>
	40	<p>◇ 유의사항 ● 앞의 문항 37, 38, 39번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구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각 사람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을 기입해야 함 ※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설득할 것 ● 응답자와의 관계 - 가구원번호 1번은 응답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기입하는 것임을 명심 - 응답자와의 관계에는 각 가구원이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글로 쓰는 것임 ※ 사례1: 응답자가 기혼 여성일 때 시동생 ⇨ 남편의 형 or 남편의 동생 ※ 사례2: 응답자가 기혼 남성일 때 부모 ⇨ 자신의 부모 or 배우자의 부모 -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를 묻고 해당되는 보기를 적음 - 《보기》에서 “(26) 돌봐주는 사람”은 가족원 중 누군가를 돌봐주기 위해 현재 해당 가구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77) 기타(누구:)는 다른 응답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을 기입하는 난으로 응답자가 말하는 것을 면접원이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함 ● 나이 - 조사시점 당시 만 나이 - 응답자가 가구원의 만 나이를 정확히 모를 때는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 등을 물어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혼인상태</p>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2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나 이혼의 경우 응답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응답을 받아내도록 주의함 ● 동거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의 ‘동거’가 아니라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함 - 함께 살고 있으면 ‘동거’,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27번 ‘별거 가족’에 포함된 사람) ‘비동거’임. 응답자는 무조건 ‘동거’에 해당함 ● 취업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에 해당함 - 소규모 농사(농사를 통해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됨 * 단,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수입이 있는 일을 할지라도 응답자 본인이 취업자가 아닌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 미취업자로 분류 ● 미취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서 표에 제시된 응답범주를 참고하여 우선 정확히 글로 기입하고, 확실한 보기 번호를 기입하도록 함 ☞ 보기 번호를 기입하는 것보다 정확히 글로 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령미달: 만 7세 이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미취업사유임 (2) 재학: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의 미취업 사유를 말함(사설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 (5) 질병: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함 (6) 심신장애: 선천적인 장애라던가,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혹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능력이 불완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9) 은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의 일 이상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함 (10) 정년퇴직: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를 말함 (11) 취업준비: 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예: 취업 정보 수집,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등) (12) 공부중: 취업 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공부를 말함(예: 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에 위한 공부(예: 재수생, 편입생, 유학 준비자 등)
	41	<p>◇ 유의사항: 가구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구의 대표자를 말함 ● 세대주나 호주가 아니어도,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될 수 있음 ● 가구주가 누구인지는 ‘응답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답해야 하고, 해당되는 사람을 가구표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 골라 적도록 함
	42-45	<p>◇ 유의사항: 응답자, 배우자, 응답자의 부모 교육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혹 옛날의 학교 시스템(소학교, 보통학교, 전문학교 등)을 말하는 응답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 면접원이 임의로 응답 보기를 골라서 체크해서는 안 되고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연구소에서 검토할 때 수정할 것임 ● 졸업/중퇴/재학 중 구분 할 것: 중퇴된 경우나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몇 학년 때 중퇴 혹은 재학 중인 지를 물어야 함. 이 문항들은 나중에 ‘교육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하고, 교육년수는 연구자의 분석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퇴/재학학년 문항에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
	46-49	<p>◇ 유의사항: 응답자 및 배우자의 취업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사임 ● 내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면접원은 사전에 이 부분의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숙지하여 정확한 응답을 빠짐없이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 때로 응답자의 응답이 보기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면접원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 <p>◇ 용어정의: ‘수입이 있는 일’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던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① 그렇다”에 해당함 ● 단, 수입이 있다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취업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업자로 취급(예를 들어: 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응답자가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미취업자로 취급) ● 임대소득자처럼 하는 일이 없이 건물, 가게 등을 임대해 주고 세를 받으면 “② 아니다”에 해당 ※ 관련 소득은 문항 46.14(배우자 48.13)의 ‘근로소득 외 월평균 소득’에 기입 ☞ 사무실을 가지고 빌딩관리 등을 포함하는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분류
	46.1 48.1	<p>◇ 용어정의: ‘고용’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관, 회사, 학교, 학원, 서비스업체 등 직장에 취직해서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를 말함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과외선생님, 파출부의 경우에는 ‘고용(임금근로자)’이 아니라 ‘자영업’에 속함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이들이 인력단체에 소속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기본급)을 받는다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
2012	46.2 46.8 48.2 48.8	<p>◇ 용어정의: '종사상지위'</p> <p>▶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직: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예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p>▶ 비임금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무보수로 도운 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으로 동일 가구 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별도로 달리하는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자영자 또는 고용주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 - 고용원을 둔 사업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46.3 46.9 48.3 48.9	<p>◇ 용어정의: '근로시간형태'</p> <p>▶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p> <p>▶ 전일제: 시간제 근로와는 달리, 일할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p>
	46.6 48.6	<p>◇ 용어정의: '기업형태'</p> <p>▶ 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철도, 우편, 수도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룸(예: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p> <p>▶ 공익기관: (사립)학교, 병원, 방송사, 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사회전체 및 공공의 이익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국·공립 학교는 정부에 해당됨 </p>
	46.13 48.12	<p>◇ 유의사항: 소득 관련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관련 질문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혹 연봉 혹은 1년 소득을 적는 면접원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기입 •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
	47 49	<p>◇ 유의사항: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질문은 응답자의 직업(주된 일자리)을 알아보는 질문임 •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정확한 직업 정보를 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질문임 <p>◇ 용어정의: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p> <p>▶ 산업/직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는 일의 분야(예: 농업, 임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판매 소매업, 기타 소매업, 도매업, 숙박업 등)를 물어 보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어떤 산업 혹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라고 물어 보고,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세요?'라는 식으로 풀어서 물어 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직종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종사하는 분야를 정확히 받아내야 함 예) '제조업'이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식료품을 만드는지 의복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인지 물어야 함 <p>▶ 직위 및 업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 보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시는 일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계신지, 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라는 식으로 질문 할 것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2	(계속)	※ 응답자가 이 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응답을 받아내야 함 예) '교사'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구분과 정식 교사인지, 임시 교사인지, 보조 교사인지 등의 직위 정보가 필요함
	50	◇ 유의사항: 가구소득 ●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a)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시할 것 ※ 농업인 경우 연간 산출물을 얘기할 때가 많은 데 이때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할 것 b)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해 봄 c) 노인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 '수입 없다', '적자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음. 이때는 '자녀분들이 혹시 용돈을 주시나요?', '채소를 주위에 파시지는 않나요?' 등의 프로빙을 시도
	ISSP 「가족과 성역할의 변화 IV」 설문 모듈	
	54	◇ 유의사항 ● 동성애 가족은 자신들의 성적 지향성에 따라 서로 공동체적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두 명의 동성애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음. 다시 말해, 같은 성을 가진 두 사람이 혼인 관계를 맺고 한 집안을 이룬 것 ◇ 용어정의 ▶ 동성의 여성 부부 - 동성애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명의 여성 부부 ▶ 동성의 남성 부부 - 동성애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명의 남성 부부
	57	◇ 용어정의 ▶ 유급휴가 - 휴가 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 ※ 연차 휴가, 월차 휴가, 생리 휴가, 산전후 휴가 등
	59B	◇ 용어정의 ▶ 공적자금 - 정부가 운용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금
	EASS 「동아시아의 네트워크·사회적 자본」 모듈 설문	
	78	◇ 유의사항 ● 총 9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의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 용어정의 ▶ 주민협회: 지역 현안 등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 ▶ 반사회: 주민들이 동네의 반 단위로 매월 한 번씩 가지는 모임 ▶ 직업-직능 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예: 의사회, 변호사회) ▶ 상거래 단체: 재화나 서비스를 매매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특별주제 「한국인의 인터넷/SNS 이용 및 중독」 모듈 설문	
	102	◇ 용어정의 ▶ SNS -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함 ※ 예: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싸이월드, 미투데이 등
특별주제 「한국인의 정신건강」 모듈 설문		
109	◇ 유의사항 ● 성적인 사건에 대한 질문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 응답자가 이성일 경우 시선을 돌려 응답을 얻어내도록 함 ●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	
2013	반복 핵심 설문	
	3	◇ 유의사항 ● 총 17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의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 용어정의 ▶ 교육계: 교육이나 교육사업과 관계가 있는 분야 ▶ 중앙정부부처: 전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3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기관 ▶ 학계: 학문을 연구하는 사회 또는 학자의 사회, 주로 학술 및 과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
	11-13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지지/투표 정당을 묻는 문항으로 시기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11>: 현재(2012년 조사당시) 지지하고 있는 정당 - <문항 12-1>: 2012년 대통령선거시 투표한 후보 - <문항 13>: 수권능력을 가진 정당 • 각 문항별 응답보기(66)은 응답자가 직접 말하는 개방형 범주로, 응답자의 말을 세심히 듣고, 정확한 정당명을 기입하되, 응답자가 정당명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정당대표, 정당특성 등을 자세히 묻고,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 • <문항 12-1>의 응답보기(77)은 투표장을 방문하여 투표는 했지만 아무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경우를 말함
	14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적: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려는 입장 ▶ 보수적: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유지하려는 입장
	18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사회복지지출이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지출: 가구와 개인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동안 공적제도에 의해 조달되는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지출은 공적 제도에 의한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므로 가구 간 이전이나 개인의 후원 등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근로에 대한 임금,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당, 휴일수당, 보너스 등은 사회복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 사회적 복지지출은 현금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 수단으로 제공되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급여: 연금, 출산수당, 공공부조에서 제공되는 생계급여 등 ※ 사회서비스: 보육서비스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등 ※ 조세 수단: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감면혜택(한국에는 부녀자공제 및 자녀교육비 공제 등이 있음)과 사적 의료보험 혹은 사적연금저축에 대한 세금공제 등
	23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통 없는 방법으로 환자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은 '존엄사'를 뜻함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엄사: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38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과 관련된 질문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거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함 •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
	40-42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구만을 조사대상 가구로 하되, 비일반가구(시설 등)내 주택은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의 경우 개별 호실은 각각 일반 가구로 취급 - 비일반가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내의 주택 • 생계를 같이 할 경우(기준: 경제적 독립여부) 가구원 리스트에 포함됨 ◀ 식구(食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하여 분가한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 -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단독(개별) 가구이므로, 가구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 형제/자매, 친인척, 자취생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 • 「표본지역별 면접진행 기록표」 안에 들어 있는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를 참조하면서 응답내용에 일관성이 있도록 주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40+41+42 응답의 합계가 문항 43번 가구표의 총 가구원수와 일치해야 함
	40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가족수: 가족 중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며, 응답자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수를 말함 <p><포함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 함께 살고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6개월 미만) 출장, 휴가, 연수, 입원, 출산 등의 이유로 출타 중인 가족은 포함 함께 살고 있는 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3	(계속)	<p>경우,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동거 가족에 포함시키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시킴</p> <p><제외대상></p> <p>a) 6개월 이상 장기간 출타 중인 가족(군복무 중인 자녀[출퇴근하는 군인 제외], 취학, 취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 병원, 혹은 요양원 등에 기거 중인 가족, 감옥 입소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별거 가족</p> <p>b) 평소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잠시 집에 와 있는 가족</p> <p>- 타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의 방학 중 방문, 휴가 나온 자녀 ⇨ 별거 가족</p> <p>-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이출할 예정인 사람(출산 전·후에 친정에 와 있는 자녀, 또는 잠시 놀러와 있는 경우)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 잠시 방문 중인 친척 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c) 주말부부처럼 평소에는 따로 살고 있지만, 주말에만 와 있는 가족의 경우 ⇨ 별거 가족</p>
	41	<p>◇ 용어정의</p> <p>▶ 별거가족수: 혼인상태의 별거가 아니라 평소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취학, 입대, 취업, 감옥입소 등의 이유로 장기간(6개월 이상) 따로 사는 가족의 수임</p> <p><포함대상></p> <p>a)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혼자 자취하는 대학생의 경우 분가(부모가 거주하는 집) 가족들</p> <p>b) 취업 목적으로 부부, 가족원(자녀 등)이 분거 상태에서 별거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 (분거) 배우자, 자녀 또는 가족들 모두 별거가족에 해당</p> <p><제외대상></p> <p>a)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손자녀는 별거 가족에서 제외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b) 응답자가 결혼 후 분가한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부모 등 원가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대상></p> <p>a) 응답자가 결혼한 것은 아니나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산 지 꽤 오래 된 경우에 원가족을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b) 응답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거하는 자녀가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는 별거 가족에 포함</p> <p>c) 자녀가 응답자이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여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 그 부모가 별거 가족에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 부모가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부(모)는 별거 가족에 포함</p>
	42	<p>◇ 용어정의</p> <p>▶ 가족 외 동거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의 동거가 아닌, 친구, 직장 동료, 하숙생,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표본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p> <p><포함대상></p> <p>a)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하숙생이나 종업원 등은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p> <p>b)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응답자와 함께 자취생활하는 친구/직장 동료의 경우</p> <p>※ 본가가족은 별거 가족수에 포함</p> <p><제외대상></p> <p>a) 주인가구와 별도로 숙식하는 종업원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b) 기숙사, 복지시설 등 시설 내에 거주하는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가 조사 대상일 경우, 입소자는 제외 ⇨ 비일인가구 제외 원칙에 따름</p>
	43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의 문항 40, 41, 42번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구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각 사람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을 기입해야 함 ※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설득할 것 • 응답자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번호 1번은 응답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기입하는 것임을 명심 - 응답자와의 관계에는 각 가구원이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글로 쓰는 것임 ※ 사례1: 응답자가 기혼 여성일 때 시동생 ⇨ 남편의 형 or 남편의 동생 ※ 사례2: 응답자가 기혼 남성일 때 부모 ⇨ 자신의 부모 or 배우자의 부모 -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를 묻고 해당되는 보기를 적음 - <<보기>>에서 "(26) 돌봐주는 사람"은 가족원 중 누군가를 돌봐주기 위해 현재 해당 가구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77) 기타(누구:)는 다른 응답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을 기입하는 난으로 응답자가 말하는 것을 면접원이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함 • 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시점 당시 만 나이 - 응답자가 가구원의 만 나이를 정확히 모를 때는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 등을 물어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혼인상태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3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나 이혼의 경우 응답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응답을 받아내도록 주의함 ● 동거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의 '동거'가 아니라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함 - 함께 살고 있으면 '동거',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41번 '별거 가족'에 포함된 사람) '비동거'임. 응답자는 무조건 '동거'에 해당함 ● 취업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에 해당함 - 소규모 농사(농사를 통해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됨 * 단,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수입이 있는 일을 할지라도 응답자 본인이 취업자가 아닌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 미취업자로 분류 ● 미취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서 표에 제시된 응답범주를 참고하여 우선 정확히 글로 기입하고, 확실한 보기 번호를 기입하도록 함 ☞ 보기 번호를 기입하는 것보다 정확히 글로 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령미달: 만 7세 이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미취업사유임 (2) 재학: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의 미취업 사유를 말함(사실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 (5) 질병: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함 (6) 심신장애: 선천적인 장애라던가,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혹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능력이 불완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9) 은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의 일 이상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함 (10) 정년퇴직: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를 말함 (11) 취업준비: 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예: 취업 정보 수집,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등) (12) 공부중: 취업 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공부를 말함(예: 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에 위한 공부(예: 재수생, 편입생, 유학 준비자 등)
	44	<p>◇ 유의사항: 가구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구의 대표자를 말함 ● 세대주나 호주가 아니어도,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될 수 있음 ● 가구주가 누구인지는 '응답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답해야 하고, 해당되는 사람을 가구표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 골라 적도록 함
	45-49	<p>◇ 유의사항: 응답자, 배우자, 응답자의 부모 교육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혹 옛날의 학교 시스템(소학교, 보통학교, 전문학교 등)을 말하는 응답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 면접원이 임의로 응답 보기를 골라서 체크해서는 안 되고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연구소에서 검토할 때 수정할 것임 ● 졸업/중퇴/재학 중 구분 할 것: 중퇴인 경우나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몇 학년 때 중퇴 혹은 재학 중인 지를 물어야 함. 이 문항들은 나중에 '교육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하고, 교육 년수는 연구자의 분석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퇴/재학학년 문항에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
	50-53	<p>◇ 유의사항: 응답자 및 배우자의 취업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사임 ● 내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면접원은 사전에 이 부분의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숙지하여 정확한 응답을 빠짐없이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 때로 응답자의 응답이 보기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면접원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 <p>◇ 용어정의: '수입이 있는 일'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던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① 그렇다"에 해당함 ● 단, 수입이 있다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취업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업자로 취급(예를 들어, 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응답자가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미취업자로 취급) ● 임대소득자처럼 하는 일이 없이 건물, 가게 등을 임대해 주고 세를 받으면 "② 아니다"에 해당 ※ 관련 소득은 문항 50.15(배우자 52.13)의 '근로소득 외 월평균 소득'에 기입 ☞ 사무실을 가지고 빌딩관리 등을 포함하는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분류
	50.1 52.1	<p>◇ 용어정의: '고용'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관, 회사, 학교, 학원, 서비스업체 등 직장에 취직해서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를 말함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과외선생님, 파출부의 경우에는 '고용(임금근로자)'이 아니라 '자영업'에 속함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3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이들이 인력단체에 소속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기본급)을 받는다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
	50.2 50.9 52.2 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의: '중사상지위' ▶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직: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예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무보수로 도운 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으로 동일 가구 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별도로 달리하는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자영자 또는 고용주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 - 고용원을 둔 사업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50.3 50.10 52.3 5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의: '근로시간형태' ●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시간제 근로와는 달리, 일할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50.6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의: '기업형태' ▶ 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철도, 우편, 수도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룸(예: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 공익기관: (사립)학교, 병원, 방송사, 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사회단체 및 공공의 이익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국·공립 학교는 정부에 해당됨
	50.14 5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관련 질문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 ● 간혹 연봉 혹은 1년 소득을 적는 면접원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기법 ●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
	51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질문은 응답자의 직업(주된 일자리)을 알아보는 질문임 ●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정확한 직업 정보를 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질문임 ◇ 용어정의: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는 일의 분야에: 농업, 임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판매 소매업, 기타 소매업, 도매업, 숙박업 등을 물어 보는 것임 ▶ 우선, '어떤 산업 혹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라고 물어 보고,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세요?'라는 식으로 풀어서 물어 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직종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종사하는 분야를 정확히 받아내야 함 예) '제조업'이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식료품을 만드는지 의복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인지 물어야 함 ▶ 직위 및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 보는 것임 ▶ '하시는 일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계신지, 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라는 식으로 질문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이 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응답을 받아내야 함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3	(계속)	예) '교사'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구분과 정식 교사인지, 임시 교사인지, 보조 교사인지 등의 직위 정보가 필요함
	54	<p>◇ 유의사항: 가구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a)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경우 연간 산출물을 얘기할 때가 많은 데 이때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할 것 b)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해 봄 c) 노인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 '수입 없다', '적자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음. 이때는 '자녀분들이 혹시 용돈을 주시나요?', '채소를 주위에 파시지는 않나요?' 등의 프로빙을 시도해서 응답을 얻어내도록 함
	특별주제 「위험사회(Risk Society)」 모듈 설문	
	70 71 72 73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의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성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방사성물질을 말함 ※ 예: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또는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기물, 핵분열생성물, 냉각수, 냉각가스 등의 누출물 뿐 아니라 실험이나 작업에 사용된 공구, 형광, 종이, 세척수 등
	특별주제 「한국인의 인터넷/SNS활용」 모듈 설문	
	75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함 ※ 예: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싸이월드, 미투데이 등
	특별주제 「한국인의 일자리 선택과 직업가치」 모듈 설문	
	91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관의 개념에는 개인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적 가치관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의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 ※ 예: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 소속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선호 의지에 따라 명백해지는 일반적인 생각
특별주제 「한국인의 노동가치」 모듈 설문		
94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종업원 또는 종업원 가족의 소비생활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직접 원조하여 복지를 꾀하는 일체의 체계 - 생활원조관계로서 사택, 기숙사, 아파트 등의 거주설비와 급식, 욕탕, 미용실, 이발소, 일용품판매소, 매점, 세탁 등의 제 시설, 의료관계로서 의무실, 병원, 구급실, 문화 오락시설로서 학교, 도서관, 독서실, 공장잡지, 오락실, 영사실, 운동장, 레크리에이션시설, 금융관계로서 저축, 단체보험, 저리대부금 등 - 안전위생시설로서 휴식설비, 탈의실, 화장실, 조명, 환기, 난방, 냉방 등의 설비, 화재방지시설, 안전장치시설, 보호구, 경제관계시설로서 공제제도, 기타 법정복리시설로서 사회보험, 노동보험, 질병 및 재해수당과 사회보험보완복지, 상담시설 등 ▶ 고용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의 지급을 통한 소득보장의 의미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을 의미 ▶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사용자(자본가)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대한 모든 조건 - 임금·노동시간·작업내용·노동밀도·안전위생·복리후생·휴일·휴가제도 및 각 기업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의 자유 등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4	반복 핵심 설문	
	3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7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의 프로빙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계: 교육이나 교육사업과 관계가 있는 분야 ▶ 중앙정부부처: 전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 ▶ 청와대: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기관 ▶ 학계: 학문을 연구하는 사회 또는 학자의 사회, 주로 학술 및 과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
	11 12 13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지지/투표 정당을 묻는 문항으로 시기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 <문항11>: 현재(2014년 조사당시) 지지하고 있는 정당 - <문항12,1>: 2014년 6.4지방선거시 투표한 후보 - <문항13>: 수권능력을 가진 정당 • 각 문항별 응답보기 (66)은 응답자가 직접 말하는 개방형 범주로, 응답자의 말을 세심히 듣고, 정확한 정당명을 기입하되, 응답자가 정당명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정당대표, 정당특성 등을 자세히 묻고,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 • <문항 12-1>의 응답보기 (77)은 투표장을 방문하여 투표는 했지만 아무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경우를 말함
	14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프로빙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적: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려는 입장 ▶ 보수적: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유지하려는 입장
	18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사회복지지출이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프로빙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지출: 가구와 개인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는 동안 공적제도에 의해 조달되는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함 - 사회복지지출은 공적 제도에 의한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므로 가구 간 이전이나 개인의 후원 등은 사회복지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근로에 대한 임금,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당, 휴일수당, 보너스 등은 사회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 사회적복지지출은 현금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세 수단으로 제공되기도 함 ※ 현금급여: 연금, 출산수당, 공공부조에서 제공되는 생계급여 등 ※ 사회서비스: 보육서비스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등 ※ 조세 수단: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감면혜택(한국에는 부녀자공제 및 자녀교육비 공제 등이 있음)과 사적 의료보험 혹은 사적연금저축에 대한 세금공제 등
	38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원조 [對外援助] - 타국과 그 국민을 위한 자본·상품·용역의 국제적 공여. 공식적인 대외원조에는 첫째, 무상원조나 차관과 같은 현금 등의 자본공여, 둘째, 대개 인적 자원이나 기술설비의 형태로 증여되는 기술원조와 기술교육의 2가지가 있다. 정상적인 경제원조는 원조대상국이 일정한 지속적 경제성장의 단계에 도달하면 원조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9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로 UN은 2015년까지 대외 원조를 국민총소득의 0.7%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48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가족수: 가족 중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며, 응답자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수를 말함 <포함대상> a) 평소 함께 살고 있지만, 짧은 기간동안(6개월 미만) 출장, 휴가, 연수, 입원, 출산 등의 이유로 출타 중인 가족은 포함 b) 함께 살고 있는 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경우,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동거 가족에 포함시키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시킴 <제외대상> a) 6개월 이상 장기간 출타 중인 가족(군복무 중인 자녀[출퇴근하는 군인 제외]), 취학, 취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 병원, 혹은 요양원 등에 기거 중인 가족, 감옥 입소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별거 가족 b) 평소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잠시 집에 와 있는 가족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4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의 방학 중 방문, 휴가 나온 자녀 ☞ 별거 가족 -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이출할 예정인 사람(출산 전·후에 친정에 와 있는 자녀, 또는 잠시 놀러와 있는 경우)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 잠시 방문 중인 친척 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c) 주말부부처럼 평소에는 따로 살고 있지만, 주말에만 와 있는 가족의 경우 ☞ 별거 가족
	49	<p>▶ 별거가족수: 혼인상태의 별거가 아니라 평소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취학, 입대, 취업, 감옥입소 등의 이유로 장기간(6개월 이상) 따로 사는 가족의 수입</p> <p><포함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혼자 자취하는 대학생의 경우 본가(부모가 거주하는 집) 가족들 b) 취업 목적으로 부부, 가족원(자녀 등)이 분거 상태에서 별거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 (분거) 배우자, 자녀 또는 가족들 모두 별거가족에 해당 <p><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손자녀는 별거 가족에서 제외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b) 응답자가 결혼 후 분가한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부모 등 원가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p><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응답자가 결혼한 것은 아니나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산 지 꽤 오래 된 경우에 원가족을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 b) 응답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거하는 자녀가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는 별거 가족에 포함 c) 자녀가 응답자이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여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 그 부모가 별거 가족에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부(모)는 별거 가족에 포함
	50	<p>▶ 가족 외 동거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의 동거가 아닌, 친구, 직장동료, 하숙생,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표본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p> <p><포함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하숙생이나 종업원 등은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 b)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응답자와 함께 자취생활하는 친구/직장 동료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가가족은 별거 가족수에 포함 <p><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주인가구와 별도로 숙식하는 종업원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b) 기숙사, 복지시설 등 시설 내에 거주하는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가 조사 대상일 경우, 입소자는 제외 ☞ 비일반가구 제외 원칙에 따름
51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의 문항 48, 49, 50번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구포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각 사람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을 기입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설득할 것 • 응답자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번호 1번은 응답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기입하는 것임을 명심 - 응답자와의 관계에는 각 가구원이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글로 쓰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응답자가 기혼 여성일 때 시동생 ☞ 남편의 형 or 남편의 동생 ※ 사례2: 응답자가 기혼 남성일 때 부모 ☞ 자신의 부모 or 배우자의 부모 -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를 묻고 해당되는 보기를 적음 - 《보기》에서 “(26) 돌봐주는 사람”은 가족원 중 누군가를 돌봐주기 위해 현재 해당 가구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77) 기타(누구:)는 다른 응답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을 기입하는 난으로 응답자가 말하는 것을 면접원이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함 • 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시점 당시 만 나이 - 응답자가 가구원의 만 나이를 정확히 모를 때는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 등을 물어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혼인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나 이혼의 경우 응답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응답을 받아내도록 주의함 • 동거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의 '동거'가 아니라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함 - 함께 살고 있으면 '동거',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41번 '별거 가족'에 포함된 사람) '비동거'임. 응답자는 무조건 '동거'에 해당함 • 취업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에 해당함.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4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농사 (농사를 통해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됨 * 단,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수입이 있는 일을 할지라도 응답자 본인이 취업자가 아닌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 미취업자로 분류 <p>● 미취업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서 표에 제시된 응답범주를 참고하여 우선 정확히 글로 기입하고, 확실한 보기 번호를 기입하도록 함 ☞ 보기 번호를 기입하는 것보다 정확히 글로 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함 (01)학령미달: 만 7세 이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미취업사유임 (02)재학: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의 미취업사유를 말함 (사설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 (05)질병: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함 (06)심신장애: 선천적인 장애라던가,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혹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능력이 불완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09)은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의 일 이상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함 (10)정년퇴직: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를 말함 (11)취업준비: 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예: 취업 정보 수집,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등) (12)공부중: 취업 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공부를 말함(예: 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을 위한 공부(예: 재수생, 편입생, 유학 준비자 등)
	52	<p>◇ 가구주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구의 대표자를 말함 • 세대주나 호주가 아니어도,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될 수 있음 • 가구주가 누구인지는 '응답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답해야 하고, 해당되는 사람을 <u>가구표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 골라 적도록 함</u>
	53-56	<p>◇ 응답자, 배우자, 응답자의 부모 교육수준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혹 옛날의 학교 시스템 (소학교, 보통학교, 전문학교 등)을 말하는 응답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 면접원이 임의로 응답 보기를 골라서 체크해서는 안 되고 <u>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 연구소에서 검토할 때 수정할 것임</u> • 졸업/중퇴/재학 중 구분 할 것: 중퇴인 경우나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몇 학년 때 중퇴 혹은 재학 중인 지를 물어야 함. 이 문항들은 나중에 '교육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하고, 교육년수는 연구자의 분석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퇴/재학학년 문항에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
	57 59	<p>◇ 응답자 및 배우자의 취업상태 질문 관련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사임 • 내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면접원은 사전에 이 부분의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숙지하여 정확한 응답을 빠짐없이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 때로 응답자의 응답이 보기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면접원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 <p>◇ 용어정의: '수입이 있는 일'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던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① 그렇다"에 해당함 • 단, 수입이 있다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취업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업자로 취급(예를 들어, 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응답자가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미취업자로 취급) • 임대소득자처럼 하는 일이 없이 건물, 가게 등을 임대해 주고 세를 받으면 "② 아니다"에 해당 ※관련 소득은 문항 50.15(배우자 52.13)의 '근로소득 외 월평균 소득'에 기입 ☞ 사무실을 가지고 빌딩관리 등을 포함하는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분류
	57.1 59.1	<p>◇ 용어정의: '고용'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관, 회사, 학교, 학원, 서비스업체 등 직장에 취직해서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를 말함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과외선생님, 파출부의 경우에는 '고용(임금근로자)'이 아니라 '자영업'에 속함 ☞ 만약, 이들이 인력단체에 소속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기본급)을 받는다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
	57.2 57.9 59.2 59.8	<p>◇ 용어정의: '종사상지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 - 상용직: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4	(계속)	<p>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예정된 경우</p> <p>※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p> <p>-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p> <p>● 비임금근로자</p> <p>-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무보수로 도운 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p> <p>※무급으로 동일 가구 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별도로 달리하는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음</p> <p>-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p>a)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p> <p>b)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p> <p>※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자영자 또는 고용주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p> <p>- 고용원을 둔 사업주</p> <p>a)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p> <p>b)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p> <p>※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57.3 57.10 59.3 59.9	<p>◇ 용어정의: '근로시간형태'</p> <p>●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p> <p>● 전일제: 시간제 근로와는 달리, 일할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p>
	57.6 59.6	<p>◇ 용어정의: '기업형태'</p> <p>● 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철도, 우편, 수도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룸(예: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p> <p>● 공익기관: (사립)학교, 병원, 방송사, 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사회전체 및 공공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p> <p>- 단, 국·공립 학교는 정부에 해당됨</p>
	57.14 59.12	<p>◇ 소득 관련 질문의 유의사항</p> <p>● 소득 관련 질문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p> <p>●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p> <p>※간혹 연봉 혹은 1년 소득을 적는 면접원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기입</p> <p>●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p>
	58 60	<p>◇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 유의사항</p> <p>● 이 질문은 응답자의 직업(주된 일자리)을 알아보는 질문임</p> <p>●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정확한 직업 정보를 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질문임</p> <p>◇ 용어정의: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p> <p>● 산업/직종</p> <p>- 하는 일의 분야(예: 농업, 임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판매 소매업, 기타 소매업, 도매업, 숙박업 등)를 물어 보는 것임</p> <p>☞ 우선, '어떤 산업 혹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 보고,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세요?'라는 식으로 풀어서 물어 볼 것</p> <p>※ 산업/직종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종사하는 분야를 정확히 받아내야 함</p> <p>예) '제조업'이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식료품을 만드는지 의복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인지 물어야 함</p> <p>● 직위 및 업무내용</p> <p>-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 보는 것임</p> <p>☞ '하시는 일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계신지, 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질문 할 것</p> <p>※ 응답자가 이 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응답을 받아내야 함</p> <p>예) '교사'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구분과 정식 교사인지, 임시 교사인지, 보조 교사인지 등의 직위 정보가 필요함</p>
61	<p>◇ 가구소득 관련 유의사항</p> <p>●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p>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4	(계속)	a)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 ※ 농업인 경우 연간 산출물을 얘기할 때가 많은 데 이때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할 것 b)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해 봄 c) 노인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 '수입 없다' '적자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음. 이때는 '자녀 분들이 혹시 용돈을 주시나요?' '채소를 주위에 파시지는 않나요?' 등의 프로빙을 시도해서 응답을 얻어내도록 함
	ISSP 「시민권 II」 설문 모듈	
	63	◇ 용어정의 ● 종교적 극단주의자 - 특정 종교에 근거하여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한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는 태도를 종교적 극단주의라 하며, 종교를 앞세운 폭력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알카에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Ku, Klux, Klan) 등
	특별주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모듈 설문	
	91	◇ 성공 요인 유의사항 ● 제시된 여러 사항들이 각각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임. 성공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응답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 ◇ 용어정의 ▶ 정치적 연고: 연고(緣故)란 혈통, 정분, 법률 따위로 맺어진 관계 또는 인연을 말함. (예: 학연, 지연, 깊은 연고를 맺다.)
	92	◇ 용어정의 ● 사회공정성: 우리 사회의 기회 공정성에 대해 묻는 질문임.
	98	◇ 용어정의 ▶ 국영기업: 국가가 설립하여 관리·경영하는 기업으로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포함
특별주제 「위험사회 (Risk Society)」 모듈 설문		
102-105	◇ 유의사항 - 총 7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의 프로빙 지침을 이용하여 설명 ◇ 용어정의 ▶ 방사성 폐기물 -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방사성물질을 말함 ※ 예: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또는 실험실에서 나오는 폐기물, 핵분열생성물, 냉각수, 냉각가스 등의 누출물 뿐 아니라 실험이나 작업에 사용된 공구, 형겔, 종이, 세척수 등	
2016	반복 핵심 설문	
	4	◇ 유의사항 - 총 17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 각 기관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임을 유의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의 용어정의를 이용하여 설명 ◇ 용어정의 ▶ 교육계: 교육이나 교육사업과 관계가 있는 분야 ▶ 중앙 정부 부처: 전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 ▶ 청와대: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기관 ▶ 학계: 학문을 연구하는 사회 또는 학자의 사회, 주로 학술 및 과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
	9	◇ 용어정의 ▶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 흔히 새터민, 탈북자 등으로 불림
	12 13	◇ 유의사항 ● 응답자의 지지/투표 정당을 묻는 문항으로 시기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 <문항 12>: 현재(2016년 조사당시) 지지하고 있는 정당 - <문항 13>: 2016년 4.13 20대 총선 당시 투표한 후보 ● 각 문항별 응답 보기 (66)은 응답자가 직접 말하는 개방형 범주로, 응답자의 말을 세심히 듣고, 정확한 정당명을 기입하되, 응답자가 정당명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정당대표, 정당특성 등을 자세히 묻고 ,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 ● <문항 13.1>의 응답 보기 (77)은 투표장을 방문하여 투표는 했지만 아무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고 기권표 를 던진 경우를 말함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6	14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용어정의를 이용하여 설명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적: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려는 입장 ▶ 보수적: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유지하려는 입장
	25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지향: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인 끌림 ※ 이성애·양성애·동성애 지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8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주 지역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의 자신의 주거 지역에 대한 판단을 적음
	34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사: 뇌활동이 회복이 불가능하게 정지된 것. 자발적으로 호흡이 불가능하고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혼수상태
	39-41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구만을 조사대상 가구로 하되, 비일반가구(시설 등)내 주택은 포함함 - 일반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의 경우 개별 호실은 각각 일반 가구로 취급 - 비일반가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내의 주택 • 생계를 같이 할 경우(기준: 경제적 독립여부) 가구원 리스트에 포함됨 ⇨ 식구(食口) - 혼인하여 분가한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 -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단독(개별) 가구이므로, 가구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음 ※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형제/자매·친인척·자취생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 • 「면접진행 기록표」 안에 들어 있는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를 참조하면서 응답내용에 일관성이 있도록 주의함 ※ 문항 39+40+41 응답의 합계가 문항 42번 가구표의 총 가구원수와 일치해야 함
	39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 가족수: 가족 중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며, 응답자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수 <포함대상> a) 평소 함께 살고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6개월 미만) 출장, 휴가, 연수, 입원, 출산 등의 이유로 출타 중인 가족은 포함 b) 함께 살고 있는 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경우,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동거 가족에 포함시키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시킴 <제외대상> a) 6개월 이상 장기간 출타 중인 가족(군복무 중인 자녀[출퇴근하는 군인 제외]), 취학, 취업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 병원, 혹은 요양원 등에 기거 중인 가족, 교도소 입소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별거 가족 b) 평소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잠시 집에 와 있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의 방학 중 방문, 휴가 나온 자녀 ⇨ 별거 가족 -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이출할 예정인 사람(출산 전·후에 친정에 와 있는 자녀, 또는 잠시 놀러 와 있는 경우)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 잠시 방문 중인 친척 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c) 주말부부처럼 평소에는 따로 살고 있지만, 주말에만 와 있는 가족의 경우 ⇨ 별거 가족
	40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 가족수: 혼인상태의 별거가 아니라 평소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취학, 입대, 취업, 교도소입소 등의 이유로 장기간(6개월 이상) 따로 사는 가족의 수 <포함대상> a)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혼자 자취하는 대학생의 경우 본가(부모가 거주하는 집) 가족들 b) 취업 목적으로 부부, 가족원(자녀 등)이 분거 상태하고 있는 상태에서 따로 나가 살고 있는(분거) 사람이 조사대상자인 경우 별거가족에 해당 <제외대상> a)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손자녀는 별거 가족에서 제외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b) 응답자가 결혼 후 분가한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부모 등 원가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대상> a) 응답자가 결혼한 것은 아니나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산 지 꽤 오래 된 경우에 원가족을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 b) 응답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거하는 자녀가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 ※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는 별거 가족에 포함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6	(계속)	c) 자녀가 응답자이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여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 그 부모가 별거 가족에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 ※ 부모가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부모는 별거 가족에 포함
	41	◇ 용어정의 ▶ 가족 외 동거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의 동거가 아닌, 친구, 직장동료, 하숙생,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표본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포함대상> a)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하숙생이나 종업원 등은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 b)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응답자와 함께 자취 생활하는 친구/직장 동료의 경우 ※ 분가가족은 별거 가족수에 포함 <제외대상> a) 주인가구와 별도로 숙식하는 종업원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b) 기숙사, 복지시설 등 시설 내에 거주하는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가 조사 대상일 경우 ⇨ 입소자는 제외
	42	◇ 유의사항 • 앞의 <문항 39>, <문항 40>, <문항 41>번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구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각 사람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을 기입해야 함 ※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설득할 것 • 응답자와의 관계 - 가구원번호 1번은 응답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기입하는 것임을 명시 - 응답자와의 관계에는 각 가구원이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글로 쓰는 것임 ※ 사례1: 응답자가 기혼 여성일 때 시동생 ⇨ 남편의 형 or 남편의 동생 ※ 사례2: 응답자가 기혼 남성일 때 부모 ⇨ 자신의 부모 or 배우자의 부모 -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를 묻고 해당되는 보기를 적음 - 응답 보기에서 "(26) 돌봐주는 사람"은 가족원 중 누군가를 돌봐주기 위해 현재 해당 가구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77) 기타(누구:)는 다른 응답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을 기입하는 란으로 응답자가 말하는 것을 면접원이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함 • 나이 - 조사시점 당시 만 나이 - 응답자가 가구원의 만 나이를 정확히 모를 때는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 등을 물어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혼인상태 - 별거나 이혼의 경우 응답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응답을 받아내도록 주의함 • 동거여부 -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의 '동거'가 아니라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함 - 함께 살고 있으면 '동거',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문항 41> '별거 가족'에 포함된 사람) '비동거'임. 응답자는 무조건 '동거'에 해당함 • 취업여부 -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에 해당함 - 소규모 농사 (농사를 통해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됨 ※ 단,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수입이 있는 일을 할지라도 응답자 본인이 취업자가 아닌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 미취업자로 분류(계속) • 미취업사유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서 표에 제시된 응답범주를 참고하여 우선 정확히 글로 기입하고, 확실한 응답 보기 번호를 기입하도록 함 ⇨ 보기 번호를 기입하는 것보다 정확히 글로 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함 (01)학령미달: 만 7세 이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미취업사유임 (02)재학: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의 미취업사유를 말함 (사설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 (05)질병: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함 (06)심신장애: 선천적인 장애라던가,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혹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능력이 불완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09)은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의 일 이상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함 (10)정년퇴직: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를 말함 (11)취업준비: 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예: 취업 정보 수집,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등) (12)공부중: 취업 등을 위한 공부라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공부를 말함(예: 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학을 위한 공부(예: 재수생, 편입생, 유학 준비자 등)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6	43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나 호주가 아니어도,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될 수 있음 - 가구주가 누구인지는 '응답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답해야 함 - 해당되는 사람을 가구표에 나와 있는 응답 보기에서 골라 적도록 함 <p>◇ 용어정의&유의사항</p> <p>▶ 가구주: 한 가구의 대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나 호주가 아니어도,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될 수 있음 - 가구주가 누구인지는 '응답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답해야 함 - 해당되는 사람을 가구표에 나와 있는 응답 보기에서 골라 적도록 함
	49 50 51 52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배우자, 응답자의 부모 교육수준 - 간혹 옛날의 학교 시스템 (소학교, 보통학교, 전문학교 등)을 말하는 응답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 면접원이 임의로 응답 보기를 골라서 체크해서는 안 된다.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 - 졸업/중퇴/재학 구분할 것: 중퇴인 경우나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몇 학년 때 중퇴 혹은 재학 중인 지를 물어야 함. 이 문항들은 나중에 '교육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하고, 교육년수는 연구자의 분석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퇴/재학학년 문항에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
	53 55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및 배우자의 취업상태 -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사 - 내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면접원은 사전에 이 부분의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숙지하여 정확한 응답을 빠짐없이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 때로 응답자의 응답이 보기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면접원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 • 수입이 있는 일 - 일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던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① 그렇다"에 해당함 - 단, 수입이 있다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취업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업자로 취급 (예: 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응답자가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미취업자로 취급) - 임대소득자처럼 하는 일이 없이 건물, 가게 등을 임대해 주고 세를 받으면 "② 아니다"에 해당 ※ 관련 소득은 <문항 49.15>(배우자 <문항 51.13>)의 '근로소득 외 월평균 소득'에 기입 ☞ 사무실을 가지고 빌딩관리 등을 포함하는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분류 <p>◇ 용어정의</p> <p>▶ 고용: 직장에 취직해서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 상태</p> <p><포함대상></p> <p>a) 정부 기관, 회사, 학교, 학원, 서비스업체 등에 고용되어 봉급(기본급)을 받는 근로자</p> <p><제외대상></p> <p>a)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과외선생님, 파출부의 경우에는 '고용(임금근로자)'이 아니라 '자영업'에 속함</p> <p>☞ 만약, 이들이 인력단체에 소속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기본급)을 받는다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p>
53.2 53.9 55.2 55.8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 ▶ 상용직: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예정된 경우 ※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비임금근로자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무보수로 도운 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 ※ 무급으로 동일 가구 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별도로 달리하는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a)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6	(계속)	<p>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p> <p>b)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p> <p>※ 단,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자영자 또는 고용주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p> <p>▶ 고용원을 둔 사업주</p> <p>a)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p> <p>b)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p> <p>※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53 53.10 55.3 55.9	<p>◇ 용어정의</p> <p>▶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p> <p>▶ 전일제: 시간제 근로와는 달리, 일할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p>
	53.6 55.6	<p>◇ 용어정의</p> <p>▶ 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철도, 우편, 수도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룸(예: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p> <p>▶ 공익기관: (사립)학교, 병원, 방송사, 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사회전체 및 공공의 이익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p> <p>※ 단, 국·공립학교는 정부에 해당됨</p>
	53.14 53.15 55.12 55.13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소득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경우 연간 산출물을 얘기할 때가 많은 데 이때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 노인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 '수입 없다' '적자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음. 이때는 '자녀 분들이 혹시 용돈을 주시나요?' '채소를 주위에 파시지는 않나요?' 등으로 물어보아 응답을 얻어 내도록 함
	54 56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은 응답자의 직업(주된 일자리)을 알아보는 질문임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정확한 직업 정보를 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질문임 산업/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는 일의 분야(예: 농업, 임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판매 소매업, 기타 소매업, 도매업, 숙박업 등)를 물어 보는 것임 ☞ 우선, '어떤 산업 혹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 보고,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세요?'라는 식으로 풀어서 물어 볼 것 ※ 산업/직종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종사하는 분야를 정확히 받아내야 함 (예: '제조업'이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식료품을 만드는지 의복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인지 물어야 함) 직위 및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 보는 것임 ☞ '하시는 일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계신지, 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라는 식으로 질문 할 것 ※ 응답자가 이 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응답을 받아내야 함 (예: '교사'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구분과 정식 교사인지, 임시 교사인지, 보조 교사인지 등의 직위 정보가 필요함)
	EASS 「동아시아의 가족」 모듈 조사	
	72	<p>◇ 용어정의</p> <p>▶ 여가활동: 일이나 공부 따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시간. 또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쉬거나 노는 일</p>
	ISSP 「정부의 역할 V」 모듈 조사	
	83	<p>◇ 용어정의</p> <p>▶ 공개집회: 공동의 의견형성과 의견표명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임</p> <p>▶ 향의시위, 데모: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타인의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집회의 한 형태(예: 행진)</p>
	86	<p>◇ 용어정의</p> <p>▶ 기업규제의 완화: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없애거나 느슨하게</p>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6	(계속)	적용시키는 것 ▶ 사양산업 : 경영실적이나 기업전망 및 발전상황 등으로 보아 쇠퇴해가는 경향을 보이는 산업 ※ 성장산업의 반대말
	90	◇ 용어정의 ▶ 국제기구 : 다수의 국가가 보편적/특수적 공동관심사를 처리하기 위해 조약에 의거하여 성립시킨 정기적이고 상설적인 활동기관을 가진 지역적·세계적 조직체 ▶ 유엔 :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UN).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뉘며, 주요기구와 전문기구·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 IMF :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주로 외환시세 안정, 외환제한 제거, 자금 공여활동을 수행한다.
	96	◇ 용어정의 ▶ 테러: 정치/종교/사상적 목적을 위해 민간인한테까지 무차별로 폭력행사를 하는 것
	105	◇ 용어정의 ▶ 시장 메커니즘 :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수급이 유연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구조(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늘어나 공급과잉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위축된 수요에 맞추기 위해 가격이 낮아진다) ▶ 행정서비스 :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예: 민원안내, 민원신청, 도로 및 교통 관리, 병원, 공중보건, 식량보조, 공공주택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 보편적 서비스 : 행정서비스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공익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중에 서도 국가의 공공목적의 달성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필수적인 서비스(예: 철도, 통신)
	연구자 제안 특별 주제모듈 조사	
	106	◇ 용어정의 ▶ 원자력 발전 : 핵분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 ▶ 온실가스 : 원자력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 효과(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를 통틀어 이르는 말
	109	◇ 용어정의 ▶ SNS :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함(예: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 카카오톡은 SNS가 아닌 메신저에 해당
	112	◇ 유의사항 • 총 6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낙관성 즉 미래의 긍정적 삶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임을 유의하여 설문을 진행한다. 낙관성 척도는 낙관성과 비관성의 개인차를 조사하기 위해 긍정적 진술 3문항과 부정적 진술 3문항으로 구성
	113	◇ 유의사항 • 총 6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임을 유의하여 설문을 진행한다. 희망척도는 응답자가 판단하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경로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방법'과, '이런 경로를 찾아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통해 구성
	117	◇ 유의사항 •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유교적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가 자신을 유교인이라고 판단하는지의 여부를 적음
125	◇ 용어정의 ▶ 국가보안법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도록 제정한 법률 ※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누설·전달 등의 처벌 근거가 됨 ▶ 대체복무제 :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적 업무에 종사케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양심의 자유(헌법 20조)에서 도출될 수 있는 기본권에 근거함	
130	◇ 용어정의 ▶ 진정서 :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적은 글.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공서나 공공 기관 등에 내는 것	
2018	반복 핵심 설문	
	4	◇ 유의사항 • 총 17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 각 기관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임을 유의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의 용어 정의를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8	(계속)	<p>이용하여 설명</p>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계: 교육이나 교육사업과 관계가 있는 분야 ▶ 노동조합: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 ▶ 중앙 정부 부처: 중앙정부처는 전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들을 말하는데 대통령직속기관인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국무총리직속기관인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각 부서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각청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중앙정부부처에 해당됨 ▶ 지방자치정부: 지방자치정부는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 받아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공단체 로 크게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구), 등으로 나뉨.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 보조기관인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및 출장소,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등의 하부 행정기관이 있고, 의결기관에는 지방의회가 있음 ▶ 국회: 국회는 국가의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을 말함 ▶ 청와대: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기관을 말하며 동시에 집무공간인 대통령 관저를 말함. 직속기관으로 실장, 경호처장, 대변인, 및 40명의 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대통령관저, 국내외빈 접견을 위한 여러 건물들이 있음 ▶ 학계: 학문을 연구하는 사회 또는 학자의 사회, 주로 학술 및 과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 ▶ 시민운동단체: 시민의 입장에서 행하여지는 정치사회운동을 이끄는 사회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반핵운동연대 등
	15 15.1 16 16.1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지지/투표 정당을 묻는 문항으로 시기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 15>: 현재(2018년 조사당시) 지지하고 있는 정당 - <문항 16>: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투표한 후보 • 각 문항별 응답 보기 (66)은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정당을 말할 때 응답자가 직접 말하는 개방형 범주로, 응답자의 말을 세심히 듣고, 정확한 정당명을 기입하되, 응답자가 정당명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정당대표, 정당특성 등을 자세히 묻고,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 • <문항 16.1>의 응답 보기 (77)은 투표장을 방문하여 투표는 했지만 아무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경우를 말함
	17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용어정의를 이용하여 설명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적: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려는 입장 ▶ 보수적: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유지하려는 입장
	22 B형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 페미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 -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여성이 사회 제도 및 관념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여러 가지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포괄하는 용어
	25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 성립된 기독교 교단의 통칭
	26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농촌을 떠나 제2차·제3차 산업에 취업했던 사람이 농업에 환류하거나 환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불황으로 인해 실업한 노동력의 환류나 고령화로 퇴직한 자의 농촌복귀 등이다
27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주 지역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의 자신의 주거 지역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8	(계속)	에 대한 판단을 적음
	29	◇ 용어정의 ▶ 기본소득제도: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
	30	◇ 용어정의 ▶ 중산층: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되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집단
	33 A형 B형	◇ 용어정의 ▶ 원자력 발전 정책: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의 사용과 폐기 등 원자력의 개발과 활용에 관련된 국가 차원의 방침을 말함
	34	◇ 용어정의 ▶ 사양산업: 과거에는 높은 성장추세를 보였으나 제품의 수명주기가 성숙기를 지나 앞으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말한다
	45	◇ 유의사항 • 자살과 관련된 질문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거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
	49-53	◇ 유의사항 • 일반가구만을 조사대상 가구로 하되, 비일반가구(시설 등)내 주택은 포함함 - 일반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의 경우 개별 호실은 각각 일반 가구로 취급 - 비일반가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내의 주택 • 생계를 같이 할 경우(기준 경제적 독립여부) 가구원 리스트에 포함됨 ⇨ 식구(食口) - 혼인하여 분가한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 -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단독(개별) 가구이므로, 가구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음 ※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형제/자매·친인척·자취생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 • 「면접진행 기록표」 안에 들어 있는 《표본 가구의 만18세 이상 가구원 리스트》를 참조하면서 응답내용에 일관성이 있도록 주의함 ※ 문항 49+50+51 응답의 합계가 문항 52번 가구표의 총 가구원수와 일치해야 함
	49	◇ 용어정의 ▶ 동거 가족수: 가족 중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며, 응답자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수 <포함대상> a) 평소 함께 살고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6개월 미만) 출장, 휴가, 연수, 입원, 출산 등의 이유로 출타 중인 가족은 포함 b) 함께 살고 있는 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경우,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동거 가족에 포함시키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시킴 <제외대상> a) 6개월 이상 장기간 출타 중인 가족(군복무 중인 자녀[출퇴근하는 군인 제외]), 취학, 취업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 병원, 혹은 요양원 등에 기거 중인 가족, 교도소 입소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별거 가족 b) 평소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잠시 집에 와 있는 가족 -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의 방학 중 방문, 휴가 나온 자녀 ⇨ 별거 가족 -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이출할 예정인 사람(출산 전·후에 친정에 와 있는 자녀, 또는 잠시 놀러와 있는 경우)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 잠시 방문 중인 친척 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c) 주말부부처럼 평소에는 따로 살고 있지만, 주말에만 와 있는 가족의 경우 ⇨ 별거 가족
	50	◇ 용어정의 ▶ 별거 가족수: 혼인상태의 별거가 아니라 평소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취학, 입대, 취업, 교도소입소 등의 이유로 장기간(6개월 이상) 따로 사는 가족의 수 <포함대상> a)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혼자 자취하는 대학생의 경우 분거(부모가 거주하는 집) 가족들 b) 취업 목적으로 부부, 가족원(자녀 등)이 분거 상태하고 있는 상태에서 따로 나가 살고 있는(분거) 사람이 조사대상자인 경우 별거가족에 해당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8	(계속)	<p><제외대상></p> <p>a)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손자녀는 별거 가족에서 제외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b) 응답자가 결혼 후 분가한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부모 등 원가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대상></p> <p>a) 응답자가 결혼한 것은 아니나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산 지 꽤 오래 된 경우에 원가족을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b) 응답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거하는 자녀가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는 별거 가족에 포함</p> <p>c) 자녀가 응답자이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여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 그 부모가 별거 가족에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 부모가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부모는 별거 가족에 포함</p>
	51	<p>◇ 용어정의</p> <p>▶ 가족 외 동거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의 동거가 아닌, 친구, 직장동료, 하숙생,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표본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p> <p><포함대상></p> <p>a)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하숙생이나 종업원 등은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p> <p>b)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응답자와 함께 자취 생활하는 친구/직장 동료의 경우</p> <p>※ 본가가족은 별거 가족수에 포함</p> <p><제외대상></p> <p>a) 주인가구와 별도로 숙식하는 종업원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b) 기숙사, 복지시설 등 시설 내에 거주하는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가 조사 대상일 경우 ☞ 입소자는 제외</p>
	52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의 <문항 49>, <문항 50>, <문항 51>번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구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각 사람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을 기입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설득할 것 • 응답자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번호 1번은 응답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기입하는 것임을 명심 - 응답자와의 관계에는 각 가구원이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글로 쓰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응답자가 기혼 여성일 때 시동생 ☞ 남편의 형 or 남편의 동생 ※ 사례2: 응답자가 기혼 남성일 때 부모 ☞ 자신의 부모 or 배우자의 부모 -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를 묻고 해당되는 보기를 적음 - 응답 보기에서 "(26) 돌봐주는 사람"은 가족원 중 누군가를 돌봐주기 위해 현재 해당 가구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77) 기타(누구:)는 다른 응답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을 기입하는 란으로 응답자가 말하는 것을 면접원이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함 • 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시점 당시 만 나이 - 응답자가 가구원의 만 나이를 정확히 모를 때는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 등을 물어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혼인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나 이혼의 경우 응답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응답을 받아내도록 주의함 • 동거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 '동거'가 아니라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함 - 함께 살고 있으면 '동거,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문항 41> 별거 가족에 포함된 사람) '비동거'임. 응답자는 무조건 '동거'에 해당함 • 취업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에 해당함 - 소규모 농사 (농사를 통해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수입이 있는 일을 할지라도 응답자 본인이 취업자가 아닌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 미취업자로 분류 • 미취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서 표에 제시된 응답범주를 참고하여 우선 정확히 글로 기입하고, 확실한 응답 보기 번호를 기입하도록 함 ☞ 보기 번호를 기입하는 것보다 정확히 글로 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함 (01) 학령미달: 만 7세 이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미취업사유임 (02) 재학: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의 미취업사유를 말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8	(계속)	<p>함 (사실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p> <p>(05) 질병: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함</p> <p>(06) 심신장애: 선천적인 장애라던가,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혹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능력이 불완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p> <p>(09) 은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의 일 이상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함</p> <p>(10) 정년퇴직: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를 말함</p> <p>(11) 취업준비: 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예: 취업 정보 수집,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등)</p> <p>(12) 공부중: 취업 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공부를 말함(예: 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학을 위한 공부(예: 재수생, 편입생, 유학 준비자 등)</p>
	53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나 호주가 아니어도,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될 수 있음 - 가구주가 누구인지는 '응답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답해야 함 - 해당되는 사람을 가구표에 나와 있는 응답 보기에서 골라 적도록 함 <p>◇ 용어정의</p> <p>▶ 가구주: 한 가구의 대표자</p>
	54-57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배우자, 응답자의 부모 교육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혹 옛날의 학교 시스템 (소학교, 보통학교, 전문학교 등)을 말하는 응답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 면접원이 임의로 응답 보기를 골라서 체크해서는 안 된다.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 - 졸업/중퇴/재학 구분할 것: 중퇴인 경우나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몇 학년 때 중퇴 혹은 재학 중인 지를 물어야 함. 이 문항들은 나중에 '교육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하고, 교육년수는 연구자의 분석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퇴/재학학년 문항에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
	58 60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및 배우자의 취업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사 - 내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면접원은 사전에 이 부분의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숙지하여 정확한 응답을 빠짐없이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 - 때로 응답자의 응답이 보기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면접원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 • 수입이 있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던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① 그렇다"에 해당함 - 단, 수입이 있다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취업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업자로 취급(예: 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응답자가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미취업자로 취급) - 임대소득처럼 하는 일이 없이 건물, 가게 등을 임대해 주고 세를 받으면 "② 아니다"에 해당 ※ 관련 소득은 <문항 59.15>(배우자 <문항 61.13>)의 '근로소득 외 월평균 소득'에 기입 ⇨ 사무실을 가지고 빌딩관리 등을 포함하는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분류
	58.1 60.1	<p>◇ 용어정의</p> <p>▶ 고용: 직장에 취직해서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 상태</p> <p><포함대상></p> <p>a) 정부 기관, 회사, 학교, 학원, 서비스업체 등에 고용되어 봉급(기본급)을 받는 근로자</p> <p><제외대상></p> <p>a)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과외선생님, 파출부의 경우에는 '고용(임금근로자)'이 아니라 '자영업'에 속함 ⇨ 만약, 이들이 인력단체에 소속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기본급)을 받는다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p>
58.2 58.9 60.2 60.8	<p>◇ 용어정의</p> <p>▶ 상용직: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p> <p>▶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예정된 경우</p> <p>※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p>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8	(계속)	<p>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무보수로 도운 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으로 동일 가구 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별도로 달리하는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 b)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자영자 또는 고용주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 ▶ 고용원을 둔 사업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b)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58.3 58.10 60.3 60.9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시간제 근로와는 달리, 일할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58.6 60.6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기업으로, 철도, 우편, 수도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룸(예: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 공익기관: (사립)학교, 병원, 방송사, 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사회전체 및 공공의 이익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국·공립학교는 정부에 해당됨
	58.14 58.15 60.12 60.13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소득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경우 연간 산출물을 얘기할 때가 많은 데 이때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 •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 • 노인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 '수입 없다' '적자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음. 이때는 '자녀분들이 혹시 용돈을 주시나요?' '채소를 주위에 파시지는 않나요?' 등으로 물어보아 응답을 얻어내도록 함
	59 61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은 응답자의 직업(주된 일자리)을 알아보는 질문임 •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정확한 직업 정보를 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질문임 • 산업/직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는 일의 분야(예: 농업, 임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판매 소매업, 기타 소매업, 도매업, 숙박업 등)를 물어 보는 것임 ⇨ 우선, '어떤 산업 혹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라고 물어 보고,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세요?'라는 식으로 풀어서 물어 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직종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종사하는 분야를 정확히 받아내야 함 (예: '제조업'이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식료품을 만드는지 의복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인지 물어야 함) • 직위 및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 보는 것임 ⇨ '하시는 일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계신지, 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라는 식으로 질문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이 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응답을 받아내야 함(예: '교사'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구분과 정식 교사인지, 임시 교사인지, 보조 교사인지 등의 직위 정보가 필요함)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8	ISSP 「종교 IV」 모듈 조사	
	65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문항이 다른 문항에 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단순히 느끼는 대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해야 함
	82 83 84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방정교: 비잔티움제국 그리스도 교회의 맥을 잇는 교회로 로마가톨릭, 프로테스탄트와 함께 그리스도교의 3대 분파로 꼽힌다. 주로 러시아, 발칸반도, 서아시아 지역 등에 분포한다. (그리스정교나 러시아정교) ▶ 이슬람교: 610년에 아라비아 예언자 마호메트가 창시한 세계 3대 종교의 하나. 정교일치의 일신교로 유일신 알라가 마호메트를 통하여 계시한 코란을 경전으로 함. ▶ 유대교: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기원전 4세기부터 발달한 유대인의 민족종교, 유일신 여호와를 신봉하고 선민사상을 강하게 가짐
	90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란: 이슬람교의 경전 ▶ 스루티: 산스크리트어로 의미는 “들음” 또는 “들은 것”, 힌두교의 핵심적인 정전을 이루고 있는 경전을 지칭하는 낱말임 ▶ 토라: 일반적으로 토라는 율법서를 지칭함. 아브라함의 종교, 유대교의 율법서임
	100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불교: 1916년에 박종빈이 전라북도 익산시에 총본산을 두고 세운 불교 신흥교파,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대중화를 주창하여 각자 직업에 종사하며 교화사업을 시작함 ▶ 천도교: 최제우가 창건한 동학을 제3대 교주인 손병희가 개칭한 이름.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유일신 한울님을 신앙대상으로 하는 종교임 ▶ 힌두교: 인도의 토착신앙과 브라만교가 융합한 종교체계로 사회제도와 연계가 특징적임
	EASS 「동아시아의 문화와 세계화」 모듈 조사	
	109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 번호(①②)의 ‘매우 많이’와 ‘상당히 많이’에 대한 어감의 강도로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매우>>상당히) ▶ 매우: 보통을 훨씬 넘는 정도로 ▶ 상당히: 어지간히 많이. 또는 적지 아니하게
	110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지: 유해를 매장하는 장소(납골당, 묘비 해당)
	116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 집단의 통일을 유지하고 성원이 행동하는 데 있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
	연구자 제안 특별 주제모듈 조사	
	128 130 131 132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129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UN):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뉘며, 주요기구와 보조기구·전문기구로 구성되어 있음
134	◇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문항을 살펴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허용하는지 혹은 허용하지 않는지에 대해 묻고 있으며, 보기 문항(①②③④)은 허용 혹은 비허용에 대한 강도를 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은 보기 문항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 	
137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에서 중간관리층과 현장관리층에 속하는 사람 - 생산 및 작업 관리자, 재정 및 행정관리자, 인사 및 노사관계 관리자, 세일즈 및 마케팅 관리자, 광고 및 홍보 관리자, 공급 및 유통 관리자, 회계서비스 관리자, 연구개발관리자,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18	(계속)	중소기업 관리자 등 ▶ 전문가 및 준전문가 : 물리학, 수학, 공학 전문가, 생물학 전문가, 의사, 약사, 간호전문가, 교육전문가(대학교수, 초·중·고교, 유치원 교사, 특수교육교사, 기타 교육전문가), 물리학, 공학 기술자, 컴퓨터 준전문가(컴퓨터 장비, 산업로봇 조작자), 광학 전기장비조작자, 선박 항공 기술자, 안전 품질 검사자, 건강 관련 준전문가(의료, 간호 보조원), 교육, 재정·서비스관련, 사업관련, 행정, 사회사업관련(사회복지) 준전문가, 예술·오락·스포츠 준전문가, 종교관련 준전문가
	151	◇ 용어정의 ▶ 봉사 :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
	156	◇ 용어정의 ▶ 진정서 :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적은 글.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공서나 공공 기관 등에 내는 것 ▶ SNS :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함 ※ 예: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스토리, 미투데이 등
2021	4	◇ 유의사항 • 총 19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 각 기관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임을 유의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질문하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은 아래의 용어 정의를 이용하여 설명 ◇ 용어정의 ▶ 교육계 : 교육이나 교육사업과 관계가 있는 분야 ▶ 노동조합 :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 ▶ 중앙 정부 부처 : 중앙정부처는 전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들을 말하는데 대통령직속기관인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국무총리직속기관인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각 부처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각청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중앙정부부처에 해당됨 ▶ 지방 자치 정부 : 지방자치정부는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 받아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공단체 로 크게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구), 등으로 나뉨.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 보조기관인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및 출장소,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등의 하부 행정기관이 있고, 의결기관에는 지방의회가 있음 ▶ 국회 : 국회는 국가의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을 말함 ▶ 학계 : 학문을 연구하는 사회 또는 학자의 사회, 주로 학술 및 과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들 ▶ 청와대 :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관계된 행정기관을 말하며 동시에 집무공간인 대통령 관저를 말함. 직속기관으로 실장, 경호처장, 대변인, 및 40명의 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대통령관저, 국내외빈 접견을 위한 여러 건물들이 있음 ▶ 시민운동단체 : 시민의 입장에서 행하여지는 정치사회운동을 이끄는 사회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반핵운동연대 등
	13 13.1	◇ 유의사항 • 응답자의 지지 정당을 묻는 문항으로 시기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 <문항 13>: 현재(2021년 조사당시) 지지하고 있는 정당 • 각 문항별 응답 보기 (66)은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정당을 말할 때 응답자가 직접 말하는 개방형 범주로, 응답자의 말을 세심히 듣고, 정확한 정당명을 기입하되, 응답자가 정당명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정당대표, 정당특성 등을 자세히 묻고 ,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
	14	◇ 유의사항 •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가 용어를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21		<p>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용어정의를 이용하여 설명</p>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적: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려는 입장 ▶ 보수적: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유지하려는 입장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 성립된 기독교 교단의 통칭
	25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 성립된 기독교 교단의 통칭
	26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주 지역에 관한 것으로, 응답자의 자신의 주거 지역에 대한 판단을 적음
	34 35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소득 제도: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
	36	<p>◇ 용어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발전 정책: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의 사용과 폐기 등 원자력의 개발과 활용에 관련된 국가 차원의 방침을 말함
	49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과 관련된 질문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거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
	52-58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구만을 조사대상 가구로 하되, 비일반가구(시설 등)내 주택은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의 경우 개별 호실은 각각 일반 가구로 취급 - 비일반가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내의 주택 • 생계를 같이 할 경우(기준: 경제적 독립여부) 가구원 리스트에 포함됨 ⇨ 식구(食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하여 분가한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 -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단독(개별) 가구이므로, 가구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형제/자매·친인척·자취생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 ※ 문항 56+57+58 응답의 합계가 문항 52번 가구표의 총 가구원수와 일치해야 함
	52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뒤의 <문항 56>, <문항 57>, <문항 58>번에 포함된 사람들이 가구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각 사람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을 기입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귀찮아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더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설득할 것 • 응답자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번호 1번은 응답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기입하는 것임을 명심 - 응답자와의 관계에는 각 가구원이 응답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글로 쓰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응답자가 기혼 여성일 때 시동생 ⇨ 남편의 형 or 남편의 동생 ※ 사례2: 응답자가 기혼 남성일 때 부모 ⇨ 자신의 부모 or 배우자의 부모 -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를 묻고 해당되는 보기를 적음 - 응답 보기에서 "(26) 돌봐주는 사람"은 가족원 중 누군가를 돌봐주기 위해 현재 해당 가구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77) 기타(누구:)는 다른 응답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람을 기입하는 란으로 응답자가 말하는 것을 면접원이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함 • 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 년생인지, 몇 월생인지 등을 물어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혼인상태 - 별거나 이혼의 경우 응답을 꺼려할 수 있으므로, 응답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응답을 받아내도록 주의함 • 동거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서 '동거'란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로의 '동거'가 아니라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함 - 함께 살고 있으면 '동거, 일시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문항 41> '별거 가족에 포함된 사람' 비동거임. 응답자는 무조건 '동거'에 해당함 • 취업여부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에 해당함 - 소규모 농사 (농사를 통해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등도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수입이 있는 일을 할지라도 <u>응답자 본인이</u> 취업자가 아닌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 <u>미취업자</u>로 분류 ● 미취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서 표에 제시된 응답범주를 참고하여 우선 정확히 글로 기입하고, 확실한 응답 보기 번호를 기입하도록 함 ☞ 보기 번호를 기입하는 것보다 정확히 글로 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학령미달: 만 7세 이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미취업사유임 (02) 재학: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사람의 미취업사유를 말함 (사설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 (05) 질병: 병이 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함 (06) 심신장애: 선천적인 장애라던가,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 혹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능력이 불완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09) 은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의 일 이상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함 (10) 정년퇴직: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이 되어 은퇴한 경우를 말함 (11) 취업준비: 현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취업 정보 수집,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고시 준비 등) (12) 공부중: 취업 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학업을 위한 공부를 말함(예: 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학교 입학에 위한 공부(예: 재수생, 편입생, 유학 준비자 등)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나 호주가 아니어도,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주가 될 수 있음 - 가구주가 누구인지는 '응답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대답해야 함 - 해당되는 사람을 <u>가구표에 나와 있는 응답 보기</u>에서 골라 적도록 함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 한 가구의 대표자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 가족수: 가족 중 현재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며, <u>응답자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수</u> <포함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u>평소 함께 살고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6개월 미만)</u> 출장, 휴가, 연수, 입원, 출산 등의 이유로 출타 중인 가족은 포함 b) <u>함께 살고 있는 삼촌(시동생), 고모(시누이), 이모(처형, 처제), 사돈, 조카, 사촌 등의 경우, 응답자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u> 동거 가족에 포함시키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시킴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6개월 이상 장기간 출타 중인 가족(군복무 중인 자녀[출퇴근하는 군인 제외]), 취학, 취업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 병원, 혹은 요양원 등에 기거 중인 가족, 교도소 입소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별거 가족 b) <u>평소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잠시 집에 와 있는 가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의 방학 중 방문, 휴가 나온 자녀 ☞ 별거 가족 -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이출할 예정인 사람(출산 전·후에 친정에 와 있는 자녀, 또는 잠시 놀러와 있는 경우)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 잠시 방문 중인 친척 등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c) 주말부부처럼 평소에는 따로 살고 있지만, 주말에만 와 있는 가족의 경우 ☞ 별거 가족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거 가족수: 혼인상태의 별거가 아니라 평소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취학, 입대, 취업, 교도소입소 등의 이유로 장기간(6개월 이상) 따로 사는 가족의 수 <포함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혼자 지취하는 대학생의 경우 본가(부모가 거주하는 집) 가족들 b) 취업 목적으로 부부, 가족원(자녀 등)이 분거 상태하고 있는 상태에서 따로 나가 살고 있는(분거) 사람이 조사대상자인 경우 별거가족에 해당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손자녀는 별거 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b) 응답자가 결혼 후 분가한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부모 등 원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21		<p><응답자의 주관적 판단 대상></p> <p>a) 응답자가 결혼한 것은 아니나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나와 산 지 꽤 오래 된 경우에 원가족을 별거 가족에 포함시키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b) 응답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거하는 자녀가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는 별거 가족에 포함</p> <p>c) 자녀가 응답자이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여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을 때, 그 부모가 별거 가족에 포함되는지는 응답자의 주관에 따름</p> <p>※ 부모가 이혼이 아닌 '별거'의 경우 별거하고 있는 부모는 별거 가족에 포함</p>
	58	<p>◇ 용어정의</p> <p>▶ 가족 외 동거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미의 동거가 아닌, 친구, 직장동료, 하숙생,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표본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p> <p><포함대상></p> <p>a)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하숙생이나 종업원 등은 가족 외 동거자에 포함</p> <p>b)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응답자와 함께 자취 생활하는 친구/직장 동료의 경우</p> <p>※ 본가가족은 별거 가족수에 포함</p> <p><제외대상></p> <p>a) 주인가구와 별도로 숙식하는 종업원 ⇨ 가구원 리스트에서 제외</p> <p>b) 기숙사, 복지시설 등 시설 내에 거주하는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가 조사 대상일 경우⇨ 입소자는 제외</p>
	62~65	<p>◇ 유의사항</p> <p>• 응답자, 배우자, 응답자의 부모 교육수준</p> <p>- 간혹 옛날의 학교 시스템 (소학교, 보통학교, 전문학교 등)을 말하는 응답자도 있는데, 이런 경우 면접원이 임의로 응답 보기를 골라서 체크해서는 안 된다.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록</p> <p>- 졸업/중퇴/재학 구분할 것: 중퇴인 경우나 현재 재학 중인 경우는 반드시 몇 학년 때 중퇴 혹은 재학 중인 지를 물어야 함. 이 문항들은 나중에 '교육년수'를 계산할 때 필요하고, 교육년수는 연구자의 분석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중퇴/재학학년 문항에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p>
	66 68	<p>◇ 유의사항</p> <p>• 응답자 및 배우자의 취업상태</p> <p>-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사</p> <p>- 내용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면접원은 사전에 이 부분의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숙지하여 정확한 응답을 빠짐없이 받아내도록 노력해야 함</p> <p>- 때로 응답자의 응답이 보기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면접원이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응답 내용을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p> <p>• 수입이 있는 일</p> <p>- 일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이던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① 그렇다"에 해당함</p> <p>- 단, 수입이 있다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취업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업자로 취급(예: 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응답자가 학생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미취업자로 취급)</p> <p>- 임대소득자처럼 하는 일이 없이 건물, 가게 등을 임대해 주고 세를 받으면 "② 아니다"에 해당</p> <p>※ 관련 소득은 <문항 66.16>(배우자 <문항 68.14>)의 '근로소득 외 월평균 소득'에 기입</p> <p>⇨ 사무실을 가지고 빌딩관리 등을 포함하는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분류</p>
	66.1 68.1	<p>◇ 용어정의</p> <p>▶ 고용: 직장에 취직해서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봉급생활자) 상태</p> <p><포함대상></p> <p>a) 정부 기관, 회사, 학교, 학원, 서비스업체 등에 고용되어 봉급(기본급)을 받는 근로자</p> <p><제외대상></p> <p>a)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과외선생님, 파출부의 경우에는 '고용(임금근로자)'이 아니라 '자영업'에 속함</p> <p>⇨ 만약, 이들이 인력단체에 소속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봉급(기본급)을 받는다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p>
66.2 66.10 68.2 68.9	<p>◇ 용어정의</p> <p>▶ 상용직: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p> <p>▶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예정된 경우</p>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p>※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p> <p>▶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p> <p>▶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무보수로 도운 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p> <p>※ 무급으로 동일 가구 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별도로 달리하는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없음</p> <p>▶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p>a)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수행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p> <p>b)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p> <p>※ 단,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자영자 또는 고용주이나,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p> <p>▶ 고용원을 둔 사업주</p> <p>a)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p> <p>b)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p> <p>※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신만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p>
2021	66.3 66.11 68.3 68.10	<p>◇ 용어정의</p> <p>▶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p> <p>▶ 전일제: 시간제 근로와는 달리, 일할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p>
2021	66.6 68.6	<p>◇ 용어정의</p> <p>▶ 공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기업으로, 철도, 우편, 수도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룸(예: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p> <p>▶ 공익기관: (사립)학교, 병원, 방송사, 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사회전체 및 공공의 이익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p> <p>※ 단, 국·공립학교는 정부에 해당됨</p>
2021	66.15 66.16 68.13 68.14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소득은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 •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경우 연간 산출물을 얘기할 때가 많은 데 이때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 •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 • 노인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 '수입 없다' '적자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음. 이때는 '자녀분들이 혹시 용돈을 주시나요?' '채소를 주위에 파시지는 않나요?' 등으로 물어보아 응답을 얻어내도록 함
2021	67 69	<p>◇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산업, 직종, 직위 및 업무내용은 응답자의 직업(주된 일자리)을 알아보는 질문임 2. •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정확한 직업 정보를 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질문임 3. • 산업/직종 4. - 하는 일의 분야(예: 농업, 임업, 금융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고무 제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판매 소매업, 기타 소매업, 도매업, 숙박업, 등)를 물어 보는 것임 5. ☞ 우선, '어떤 산업 혹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 보고, 응답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세요?'라는 식으로 풀어서 물어 볼 것 6. ※ 산업/직종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종사하는 분야를 정확히 받아내야 함 7. (예: '제조업'이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식료품을 만드는지 의복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제조업인지 물어야 함) 8. • 직위 및 업무내용 9. -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 보는 것임 10. ☞ '하시는 일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계신지, 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2021		<p>주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질문 할 것</p> <p>11. ※ 응답자가 이 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응답을 받아내야 함</p> <p>12. (예: '교사'라는 대답으로는 불충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p> <p>13. 구분과 정식 교사인지, 임시 교사인지, 보조 교사인지 등의 직위 정보가 필요함)</p>
	70	<p>◇ 유의사항: 가구소득</p> <p>14. • 응답자가 응답하기를 상당히 꺼리는 질문임.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응답을 반드시 얻어 내도록 노력해야 함</p> <p>15. a) 소득은 '월평균 소득'임을 명심할 것</p> <p>16. ※ 농업인 경우 연간 산출물을 얘기할 때가 많은 데 이때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할 것</p> <p>17. b)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써 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응답자가 쓰도록 부탁해 봄</p> <p>18. c) 노인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 경우, '수입 없다', '적자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음. 이때는 '자녀분들이 혹시 용돈을 주시나요?', '채소를 주위에 파시지는 않나요?' 등의 프로빙을 시도해서 응답을 얻어내도록 함</p>
	73	<p>◇ 용어정의</p> <p>▶ 의료보호: 국가의 책임 하에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노령, 실업, 빈곤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p> <p>▶ 테러: 정치/종교/사상적 목적을 위해 민간인한테까지 무차별로 폭력행사를 하는 것</p> <p>▶ 빈곤: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뜻함</p>
	87	<p>◇ 용어정의</p> <p>▶ 화학물질: 화학물질공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학물질이 사용되거나 폐기되는 과정에서 자연 또는 인간에게 주는 피해를 말함</p>
	98	<p>◇ 용어정의</p> <p>▶ 청원: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서면으로 희망을 진술하는 것. 그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임</p>
	101-106	<p>◇ 유의사항</p> <p>19. • 전반적 건강상태, 신체 상태, 정신 상태, 통증 등으로 인한 일상, 직업 등에의 방해 정도를 질문</p> <p>※ 특히 102번, 103번, 104번 및 105번은 '지난 1달간'의 경험에 근거하여 응답을 받음</p> <p>20. • 문항 101에서 '여러 개의 계단 오르기'는 많은 계단들을 오르는 것을 말함</p> <p>21. • 문항 105는 감정에 대한 질문으로 감정, 기분, 정서 등의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간주</p>
	107.1	<p>◇ 용어정의</p> <p>22. ▶ 고혈압: 수축기 혈압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병원, 의원, 약국, 한의원, 한방 병원에서 혈압 검사를 하여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만 해당</p> <p>23. ▶ 당뇨병: 혈중에 당이 많아 생기는 병으로 목이 많이 마르고 오줌을 많이 누게 되고 피부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병으로, 병원(한의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만 해당</p> <p>24. ▶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질혈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등으로 말하기도 하며 운동을 하면 가슴에 누르는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병원(한의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만 해당</p> <p>25. ▶ 호흡기 문제(천식, 만성 기침):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로, 평소에 기침, 가래가 잦아 숨쉬기가 불편하거나 잠을 잘 못자거나 일을 하는데 힘겨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천식(喘息)은 기관지에 경련이 일어나는 병으로 숨이 가쁘고 기침이 나며 가래가 심함</p>
	122	<p>◇ 유의사항</p> <p>26. • 의사나 전문 시술가에 의한 치료 서비스만을 포함할 뿐, 집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뜸·부항을 직접 시행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p> <p>◇ 용어정의</p> <p>▶ 부항(附缸): 부항 단지에 불을 넣어 공기를 희박하게 만든 다음 부스럼 자리에 붙여 부스럼의 고름이나 독혈을 빨아내는 일. 전통 동양 의학의 치료 기법 중 하나</p>
	141	<p>◇ 유의사항</p>

년도	문항	용어정의/프로빙/지침/유의사항
	1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투표 정당을 묻는 문항으로 시기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 <문항 141>: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투표한 후보 ● 각 문항별 응답 보기 (66)은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정당을 말할 때 응답자가 직접 말하는 개방형 범주로, 응답자의 말을 세심히 듣고, 정확한 정당명을 기입하되, 응답자가 정당명을 정확하게 모를 경우 정당대표, 정당특성 등을 자세히 묻고, 설문지 여백에 자세히 기입 ● <문항 141.1>의 응답 보기 (77)은 투표장을 방문하여 투표는 했지만 아무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경우를 말함